자연치유도시 제천
HEALING CITY JECHEON

제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방역수칙

('21. 5.3.(월)~'21. 5.23(일))(3주간)

□ **시행일 : 2021.5.3.(월) 0시부터**

□ **주요내용**

1.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방역수칙 유지

※모임·행사 100명 미만 [집회·시위 등 50명 미만] , 스포츠관람 [10%]

2.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(11종)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집합금지 조치

※ 중점관리시설(11종) : 유흥시설6종(유흥주점,단란주점,감성주점,콜라텍,헌팅포차,홀덤펍), 노래연습장,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, 실내스탠딩공연장, **식당·카페**, 파티룸

3. 시민대상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관련 행정명령 〔5.3.(월)~〕

4. 기타사항

※ 시(市) 직영 실내체육시설, 휴양림 운영중단

제 천 시
재난안전대책본부

개인 방역수칙

□ **개인방역 5대수칙**

○ 입과 코를 가리고 **마스크 착용**하기, **2m(최소 1m)** 거리 두기
○ **아프면 검사**받고, **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**
○ 30초 **손 씻기**, 기침은 옷소매에
○ 최소 **1일 3회 이상 환기**, 주기적 소독
○ **직장동료,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**으로 만나기

□ **상황별 주요 수칙**

(1) 일할 때

○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, 증상 있으면 즉시 퇴근
○ **재택근무, 유연근무**, 휴가 적극 활용 및 회의·출장은 가급적 **영상회의**
○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, 음식 섭취 자제
○ 공용물품 사용하지 않기

(2) 식사할 때

○ 식사는 짧게, 대화 자제,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 쓰기
○ 지그재그 앉거나 한 방향으로 앉기, **한 칸 띄우기**
○ 혼잡한 식당 피하고, **포장·배달** 활용하기, 개인 접시 덜어 먹기

(3) 운동할 때

○ 가급적 야외에서 혼자 운동하기, 실내 운동 시 마스크 쓰기, 2m 거리 두기
○ 개인 물품 사용 (개인 컵, 매트 등), 탈의실 등 **공용공간 피하기**
○ 운동 전·후 모임, 음식 섭취하지 않기
○ 신체접촉이 있는 운동, 마스크 지속 착용 어려운 **격렬한 운동 자제**하기

(4) 공동 생활할 때

○ 가급적 1인 1실 사용하고, 침대 간 2m(최소 1m) 거리 두기 유지
○ 공용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, 정해진 장소 외 취식 금지
○ 손이 많이 닿는 곳은 매일 표면 소독
○ **외부인 방문이나 만남 자제, 아프면 검사받기**

시설 방역수칙

< 시설 공통 방역수칙 > * 모든 시설에 공통 적용하나, **시설별 수칙을 우선하여 적용**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**① 방역수칙 준수**	
	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-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
	■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마스크 착용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음식섭취 금지(일부 시설 미적용)	
	■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■음식물 섭취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	⑥ 손씻기	
	■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손 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, 손씻기
	⑦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	
	■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- 이용자간 거리두기 2m(최소1m)이상 준수	-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
	⑧ 환기하기(시설별 차등)	
	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	
	⑨ 소독하기(시설별 차등)	
	■일 1회 이상 소독(시설별 차등적용)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⑩ 기타	
	■방역관리자 지정 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
시설 방역수칙

<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>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흡연실	▲ 사람간 1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▲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▲ 대화 금지 안내	▲ 사람간 1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▲ 흡연실 내 대화 금지
화장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▲ 사용 전/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▲ 사용 전/후 손씻기
탈의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▲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▲ 손소독제 배치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 ▲ 공용물품 만진 후, 손씻기 또는 손소독(권고)
샤워실	▲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▲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▲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▲ 공용물품* 배치 자제 * 로션, 수건, 드라이어기 등	▲ 샤워실 내 대화 금지 ▲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▲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▲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
휴게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▲ 대화 자제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▲ 대화 자제
탕비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
민원 창구	▲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

사업장 방역수칙

< 사업장(직장) >

□ **방역관리자 지정 및 역할**

○ **(방역관리자 지정) 모든 사업장**(1인 이상 근무)에 방역관리자(**전담조직** 또는 **전담자**)를 지정

- 인원별, 층별, 구역별, 조직구성(실별, 센터별)별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적정한 인원 지정

○ **(방역관리자 역할)** 방역체계 구축, 사업장 환경관리, 전체 근로자* 및 방문자 관리, 방역상황 점검 및 평가 등

* 협력업체 근로자, 파견·용역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 근로자 포함

① **(방역체계 구축) 밀집도, 환기상태, 업무방식 등을 고려**하여 **사업장의 위험도 평가*하여 방역지침을 마련**하고, 전체 근로자에게 **메뉴얼 교육·안내 등**을 통해 전파

* 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를 통한 위험도 평가 실시(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업무안내 지침 참조)

- **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**할 수 있도록, **지역보건소와 비상연락체계 구축**

② **(사업장 환경 관리) 소독·주기적 환기 등 환경 관리, 방역물품**(마스크, 손소독제 등)을 충분히 **확보**하여 비치, 사업장 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방역지침 안내문 부착·관리 등

③ **(근로자 관리) 코로나19 증상*이 있는 직원은 출근하지 말고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,** 근무 중 **일 1회 이상 모든 근로자 증상 유무 확인** 및 **유증상자 퇴근조치, 사업장 내 마스크 착용** 등 방역**지침을 준수**하도록 관리

* (코로나19 의심증상) 발열(37.5℃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

④ **(방문자 관리)** 근로자 외 **방문자의 출입 관리,** 증상확인, 마스크 착용 등 **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** 등

⑤ **(방역상황 점검·평가)** 방역관리 지침에 따른 이행 결과를 주기적 점검·평가하고, 문제점은 개선(사업주는 적극 지원)

사업장 방역수칙

< 사업장 기본 공통수칙 >

구분	방역관리자·운영자 수칙	종사자(근로자)·방문자 수칙
공통수칙	**① 방역수칙 준수**	
	■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* 협력업체 근로자, 파견·용역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근로자 (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) 포함	**■ 방역수칙 준수**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**■ 증상확인 협조, 증상 있을 경우 출입하지 않기**
	③ 방문자(근무자 외)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
	■ 모든 방문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안내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- 자체 시스템으로 방문자 출입기록 확인할 수 있는 경우(4주보관) 출입자명부 작성 제외 ■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	**■ 모든 방문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**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마스크 착용	
	■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	
	■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	**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** * 실내 및 실외(거리두기 2m유지 불가) 마스크 반드시 착용
	⑤ 음식섭취 자제	
	■ 지정된 장소(휴게공간 등) 이외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안내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■ 지정된 장소(휴게공간 등) 이외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	⑥ 손씻기	
	■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**■ 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**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
구분	방역관리자·운영자 수칙	종사자(근로자)·방문자 수칙
	⑦ 밀집도 완화	
	■ **사무실 책상, 작업대 등은 사람 간 2m(최소 1m)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거나 칸막이 설치** * 2m(최소1m) 간격 조절 어려운 경우 모니터 등 위치 및 방향 조정	■ **근로자 간 2m(최소1m)간격 유지**
	■ **점심시간 시차제 운영** - 식사시간을 2개조 이상으로 분리 운영(운영대장 작성) * 가급적 조별 인원 균등분할 *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안내	■ **점심시간 시차제 참여** - 조별 식사시간 준수 *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
	⑧ 환기하기	
	■ **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**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구를 활용하여 환기횟수 증가	
	■ **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 가동**(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)하고 자연환기 병행 *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	
	⑨ 소독하기	
	■ **일 1회 이상 소독**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책자,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, 사무용기기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■ **개인별 사무공간(책상 등) 및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개인물품 소독 철저**
	⑩ 기타	
	■ **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**	
	■ **근로자의 증상확인안내(대장작성)** - 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	■ **증상확인 협조**
	■ **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** *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(병가, 연가휴가 등) 활용하도록 권장	■ **증상 있을 경우, 방역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출근 자제**

구분	방역관리자·운영자 수칙	종사자(근로자)·방문자 수칙
추가수칙	① 근무형태	
	■ **유연근무제**(재택근무, 시차출퇴근 등), **휴가제도**(가족돌봄휴가, 연차휴가, 병가 등)를 **적극 활용**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	■ 유연근무제(재택근무, 시차출퇴근 등), 휴가제도(가족돌봄휴가, 연차휴가, 병가 등)를 적극 활용
	② 회의 및 워크숍, 교육, 연수, 출장, 행사	
	■ 출장 최소화, 회의 및 워크숍, 교육, 연수,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(영상)으로 실시	■ 출장 최소화 하기, 회의, 워크숍, 교육, 연수,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(영상)으로 참여
	■ 대면 시 개인위생수칙(마스크착용, 손 위생, 거리유지 등) 준수안내	■ 대면으로 회의, 워크숍, 교육, 연수 등 참여 시 개인위생수칙(마스크착용, 손 위생, 거리유지 등) 준수
	■ 사업장 내 모임, 회식 자제	■ 사업장 내 모임, 회식 자제

< 구내식당 >

구분	방역관리자·운영자 수칙	종사자(근로자)·방문자 수칙
공통수칙	① 방역수칙 준수	
	■ **개인 방역수칙 준수 안내, 종사자 교육**	■ **개인 방역수칙 준수**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 **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**	■ **증상확인 협조, 증상 있을 경우 출입하지 않기**
	③ 방문자(근무자 외)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
	■ **해당 사업장 근무자 외 방문자에 한해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**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■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	■ **해당 사업장 근무자 외 방문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**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
구분	방역관리자·운영자 수칙	종사자(근로자)·방문자 수칙
	④ **마스크 착용**	
	▪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**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**	
	▪ **음식 섭취 후에는 즉시 마스크 착용 안내 및 게시** ▪ **배식·식사 시 등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는 자제 안내**	▪ **음식 섭취 후에는 즉시 마스크 착용** ▪ **배식·식사 시 등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는 자제**
	⑤ **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**	
	▪ 출입구, 테이블 등 **손소독제 비치**(필요시 위생장갑 함께 비치)	▪ 공용집게, 접시, 수정 등 사용 전 손소독제 사용 또는 위생장갑 사용
	⑥ **밀집도 완화**	
	▪ **분산 이용 안내 및 유도** ▪ 사람 간 2m(최소 1m) 이상 간격을 두고 줄서기 안내 ▪ **한 방향 보거나, 지그재그로 식사 하도록 식탁 배치** * **마주 볼 경우 가림막(칸막이) 설치**	▪ 분산 이용으로 밀집 최소화 동참 ▪ 사람 간 2m(최소 1m) 이상 간격을 두고 줄 서기 참여
	⑦ **환기하기**	
	▪ **하루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** - 조식·중식·석식 등 배식 시간 전·후 환기필요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구를 활용하여 환기횟수 증가 ▪ **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 가동**(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)하고 자연환기 병행 *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	
	⑧ **소독하기**	
	▪ 식사시간 종료 후 식탁, 의자 등 공용물품 **소독 실시** - 소독대장 작성	

구분	방역관리자·운영자 수칙	종사자(근로자)·방문자 수칙
	⑨ **기타**	
	▪ **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** - 구내식당별 방역관리자 지정	

< 기숙사 >

구분	방역관리자·운영자 수칙	종사자(근로자)·방문자 수칙
공통수칙	① **방역수칙 준수**	
	▪ **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** ▪ 외국인 근로자*에게 **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** * 기숙사 이용하는 외국인 ▪ **입소자 외 외부인 방문 자제 안내**	▪ **방역수칙 준수** ▪ 입소자는 입소자 외 외부인 만남 자제
	② **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**	
	▪ **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**	▪ **증상확인 협조, 증상 있을 경우 출입하지 않기**
	③ **방문자(외부인)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**	
	▪ **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** ▪ **방문자(외부인)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**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▪ **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**	▪ **증상확인 협조, 증상 있을 경우 출입하지 않기** ▪ **방문자(외부인)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**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**마스크 착용**	
	▪ **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**	
	▪ 공용공간 내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	▪ 공용공간 내 마스크 상시 착용
	⑤ **음식섭취 금지**	
	▪ 식당 외 공간에서 다수가 모여 음식 섭취 금지 안내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▪ 식당 외 공용공간에서 다수가 모여 음식 섭취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
구분	방역관리자·운영자 수칙	종사자(근로자)·방문자 수칙
	⑥ **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**	
	■ 출입구, 공용공간 등 손소독제 비치	■ **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**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**밀집도 완화**	
	■ 입소자 외출 및 층간 이동 자제 안내 ■ 되도록 1인실로 운영, 다인실의 경우 침대 간 거리 2m(최소1m)이상 유지 ■ 기숙사의 공용 공간(조리실, 세탁실, 화장실 등)은 혼잡한 시간을 피해 이용하고,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안내 ■ 개별 방, 구내 식당 외의 장소*에서 취사 및 취식(식사·간식) 자제 안내 * 휴게실, 매점, 세탁실, 지인 방 등	■ 입소자 외출 및 층간 이동 자제 ■ 다인실의 경우 침대 간 거리 2m(최소1m)이상 유지, 대화자제 등 ■ 기숙사의 공용 공간(조리실, 세탁실, 화장실 등)은 혼잡한 시간을 피해 이용하고,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■ 개별 방, 구내 식당 외의 장소* 에서 취사 및 취식(식사·간식) 자제 * 휴게실, 매점, 세탁실, 지인 방 등
	⑧ **환기하기**	
	■ 하루에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등을 통해 환기횟수 증가	■ 개인생활시설(1인실, 다인실)의 환기 하루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
	⑨ **소독하기**	
	■ 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- 공용공간(샤워실, 화장실, 세탁실 등) 소독 강화	■ 개인사용물품 소독 등 위생관리 철저
	⑩ **기타**	
	■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 ■ 일 1회 이상 입소자 등 증상확인(대장작성) 및 유증상자는 1인실 격리조치 - 필요 시 검사 받도록 조치 ■ 방문자 기숙사 출입 자제 안내	

구분	방역관리자·운영자 수칙	종사자(근로자)·방문자 수칙
	⑪ **시설 내 공용 장소**	
	■ 흡연실, 화장실, 탈의실, 샤워실, 휴게실, 탕비실 등은 시설 내 공용장소 수칙 적용 ■ 시설 내 실내체육시설(체력단련실 등), 음식점·카페 등이 있는 경우는 해당 시설의 수칙 적용	■ 흡연실, 화장실, 탈의실, 샤워실, 휴게실, 탕비실 등은 시설 내 공용장소 수칙 준수 ■ 시설 내 실내체육시설(체력단련실 등), 음식점·카페 등이 있는 경우는 해당 시설의 수칙 준수

< 통근버스>

구분	방역관리자·운전자 수칙	탑승자(근로자)·방문자 수칙
공통수칙	① **방역수칙 준수**	
	■ 탑승 근로자에게 개인 방역수칙 준수 안내	■ 탑승근로자는 개인방역수칙 준수
	② **탑승자 관리**	
	■ 탑승 전 탑승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임을 확인 ■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아닌 자는 탑승 제한	■ 탑승 전 사원증 등 신분확인 협조 - 사원증 등 해당 사업장 근로자임을 증빙
	③ **마스크 착용**	
	■ 운전자 포함 모든 탑승자는 **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**	
	■ **마스크 미착용 시 탑승 금지 안내** ■ **차량 내 반드시 마스크 착용 안내** - 대화 및 전화통화 자제	■ **마스크 미착용 시 탑승 금지** ■ **차량 내 반드시 마스크 착용** - 대화 및 전화통화 자제
	④ **음식섭취 금지**	
	■ 차량 내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■ 차량 내 음식물 섭취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	⑤ **손소독하기(권고)**	
	■ 차량 내 **손소독제 비치**	■ **손잡이 등 만진 후 손 소독하기(권고)**
	⑥ **밀집도 완화**	
	■ 차량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**록 탑승 인원 관리**	■ 탑승 전 탑승인원이 차량 정원을 **초과한 경우 탑승하지 않기**
	⑦ **환기하기**	
	■ **차량 운행 전·후 환기하기** - 단, 창문 개폐 불가능한 경우 출입문을 열어서 환기 - 운행 중 외기 유입 권고	
	⑧ **소독하기**	
	■ 차량 내 소독 - 운행 후 손잡이, 좌석 등 소독하기	

< 사업장 내 공용공간 수칙>

○ 사업장 (총괄)방역관리자는 **각 공용공간별 책임자를 지정**하여 **환기·소독 등 방역관리 철저히 유지**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흡연실	▲ 사람간 1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▲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▲ 대화 금지 안내	▲ 사람간 1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▲ 흡연실 내 대화 금지
화장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▲ 사용 전/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▲ 사용 전/후 손씻기
탈의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▲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▲ 손소독제 배치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 ▲ 공용물품 만진 후, 손씻기 또는 손소독(권고)
샤워실	▲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▲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▲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▲ 공용물품* 배치 자제 * 로션, 수건, 드라이어기 등	▲ 샤워실 내 대화 금지 ▲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▲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▲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
휴게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▲ 대화 자제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▲ 대화 자제
탕비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
민원 창구	▲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

1. 모임 · 행사

1) 처분사항

▪ **100인 이상 모임·행사 금지**

***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(출입문)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 1m, 실외 2m이상**

- **공무** 및 **기업**의 **필수 경영활동**에 필요한 경우 **예외 허용**
- 시험의 경우 **분할된 공간**(예:교실) 내 **100인 미만** 이면 **허용**

※ 구호, 노래, 장시간의 설명·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·시위, 대규모 콘서트*, 축제, 학술행사는 5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

* 관중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

< 금지 대상 모임·행사 >

▸**(행사)** 설명회, 공청회, 학술대회, 기념식, 수련회, 집회·시위, 페스티벌·축제, 사인회, 대규모콘서트, 강연, 훈련, 대회 등
▸**(각종 시험)** 채용시험, 자격증 시험 등

※ 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100인 기준 미적용

▪ **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**

- **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**을 이유로, **5인 이상**의 사람들이 **사전**에 **합의·약속· 공지**된 **일정**에 따라 **동일한 시간대, 동일한 장소(실내/실외)**에 모여서 진행하는 **일시적**인 **집합· 모임활동 금지**
- **(금지대상)**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직장회식(중식 포함), 계모임, 집들이, 신년회, 돌잔치*, 회갑·칠순연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**친목형성**을 **목적**으로 하는 **모든 모임·행사**

***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**

- **(인원산정)** ‘5명의 범위’ 에는 **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 등은 제외**
- **‘ 사적모임’** 은 **영유아를 포함**하여 **8인까지 모임 가능**하나, 이 경우에도 **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**까지만 모임 가능

***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**

< 적용 예외 >

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
-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*이 모이는 경우
  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) 포함
-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
  ※ 직계가족 모임,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
- 아동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
-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
②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

<추가사항>

- 전국 단위 행사(2개 시도 이상) 도내 개최 금지 권고
  * 전국 000회의 또는 전국 000행사 등
- 도 단위(2개 시군 이상) 행사 개최 금지 권고
- 각종 대면선거 운동금지, 단 법령에서 정한 선거는 제외
- 각종 행사·기념식 등에서의 애국가 등 제창 생략
- 타시도 집회·시위 참여 자제 권고
- 시민↔타시도 가족·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 권고
  · 친인척·지인 등 일상적 교류행사
  · 소모임·동호회 활동, 스포츠·공연 등 문화행사 등
  ※ 불가피한 방문 시 개인차량 이동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
- 불요불급한 모임·외출·행사 등 취소·연기 권고

① 사적모임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참석자 수칙
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·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, 사적 모임인지 확인 ▸ 위 ①,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,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	▸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* (제외)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, 아동·노인·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,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

② 집회· 시위, 축제, 대규모 콘서트, 학술행사

주최자(관리자·운영자) 수칙	이용자 수칙
▸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▸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▸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▸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* 실외 모임·행사는 제외 ▸ **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** ▸ 거리두기 실내 1m, 실외 2m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	▸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▸ 마스크 착용

③ 전시회, 박람회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수칙	**① 방역수칙 준수**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- 동시간대 이용가능인원 안내 및 게시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	■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
	■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마스크 착용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음식섭취 금지	
	■시설 내 음식물 섭취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■시설 내 음식물 섭취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	⑥ 손씻기	
	■손 소독제 비치 및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 * 공용용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밀집도 완화	
	■**이용인원 제한 적용**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** ■ 사전 예약제 운영 권고 ■ 이용자간 실내 1m, 실외 2m 거리두기 안내	■**이용인원 제한 준수**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** ■ 이용자간 실내 1m, 실외 2m 거리두기
	⑧ 환기하기	
	■ 환기가 원활하도록 상시 출입문 개방 ■ 일 3회 이상 환기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⑨ **소독하기**	
	■ 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⑩ **기타**	
	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추가 수칙	① **공용공간, 부대시설 이용**	
	■ 화장실, 휴게장소 등은 공용공간 방역수칙, 편의점, 카페 등 부대시설은 각 수칙 준수 안내	■ 화장실, 휴게장소 등은 공용공간 방역수칙, 편의점, 카페 등 부대시설은 각 수칙 준수

④ 국제회의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**방역수칙 준수**	
	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■ 국제회의 **행사장 입장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, 안내**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**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**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**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**	
	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**마스크 착용**	
	■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⑥ **손씻기**	
	■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 손 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**밀집도 완화**	
	■ **이용인원 제한 적용**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** ■ 사전 등록제 운영	■ **이용인원 제한 준수**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** *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
	⑧ **환기하기**	
	■ 환기가 원활하도록 행사 프로그램 중 수시로 환기·공조시스템 가동 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	
	⑨ **소독하기**	
	■ **일 1회 이상 소독**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(마이크, 통역 수신기 등)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⑩ **기타**	
	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 ■ 행사 진행요원 등 방역수칙 교육 ■ 발언자 테이블 간 칸막이 (높이 60cm이상, 폭은 테이블 폭과 동일하게) 설치	
추가 수칙	① **공용공간, 부대시설 이용**	
	■ 화장실, 휴게장소 등은 공용공간 방역수칙, 편의점, 카페 등 부대시설은 각 수칙 준수 안내 ■ 일시에 한 장소에 사람이 집중될 수 있는 부대 프로그램 등 자제	■ 화장실, 휴게장소 등은 공용공간 방역수칙, 편의점, 카페 등 부대시설은 각 수칙 준수
	② **식사 시**	
	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(개인별 식사 제공하되, 뷔페 제공 금지) ■ 식사 시 대화 자제 안내	■ 방역수칙에 따라 안내된 좌석에 착석하기 ■ 식사 시 대화 자제

2) 처분근거 :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의2호, 제2의4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3) 처분사유 : 제천시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
4) 처분기간 : 2021. 5. 3.(월) 00:00 ~ 2021. 5. 23.(일) 24:00

5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. 5. 3. 00:00부터

2. 중점관리시설

1) 처분당사자 :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중점관리시설 11종* 책임자·종사자 및 이용자

* 중점관리시설 11종 : **유흥시설 5종(클럽·룸살롱·나이트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·무도장), 홀덤펍, 노래연습장,** 방문판매등 직접판매 홍보관, 실내 스탠딩 공연장, 식당·카페, 파티룸

※ 무도장: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로서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(볼룸댄스)를 할 수 있는 시설

2) 처분내용 : **중점관리시설 11종**에서 방역수칙 준수, **방역수칙을 위반**하여 **확진자 발생**한 업소에 대해서는 **무관용 원칙**에 따라 **집합금지** 적용**(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집합금지 조치).** 특히, **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, 노래연습장**에서 **3일 동안**에 **2개 이상의 업소**에서 **집단감염 확진자 발생** 시 **동종업소 전체**에 대하여 **집합금지 적극검토**

※ 방문판매등 직접판매 홍보관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
① 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, 나이트, 감성주점, 헌팅포차) 방역수칙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수칙	**① 방역수칙 준수**	
	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-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	■ 방역수칙 준수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
	■ 모든 출입자(유흥종사자* 포함)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작성**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안내(4주 보관 후 폐기) *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유흥종사자를 의미 ** 수기명부 불가	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-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* 수기명부 불가
	④ 마스크 착용	
	■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④ 손씻기	
	■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마련	■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⑤밀집도 완화	
	■ 이용인원 기준 적용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** ***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포함** ■ 시설 내(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) 2m(최소1m) 거리 유지 안내 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**■ 춤추기(댄스홀/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), 테이블·룸 간에 이동 금지 및 안내**	**■ 이용인원 제한 준수**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** ***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포함** 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-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■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(최소1m) 거리 유지 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,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워 앉거나 서기 **■ 춤추기(댄스홀/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), 테이블·룸 간에 이동 금지**
	⑥ 환기하기	
	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	
	⑦ 소독하기	
	■ 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⑧ 기타	
	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■ 화장실 등 시설 내 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추가 수칙	① **노래부를 때**	
	■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, 아래 사항 모두 준수하도록 안내 ▲가창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(이동설치 불가) ▲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▲노래중 춤추기 및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▲1인 노래 즉시 마이크캡 교체 ▲노래부르기 시간간격 유지 (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)	■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, 아래사항 모두 준수 ▲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▲노래중 춤추기 및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▲노래부르기 시간간격 유지 (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)
	<감성주점> ■노래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및 안내 <헌팅포차> ■노래 및 춤추기 금지 및 안내 **<단란주점>** **■춤추기 금지 및 안내**	<감성주점> ■노래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<헌팅포차> ■노래 및 춤추기 금지 **<단란주점>** **■춤추기 금지**
	■테이블 간 이동금지 및 안내	■테이블 간 이동금지
	② **기타**	
	■실내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해 설치된 흡연실과 룸 형태 시설은 룸 안에서만 가능 및 안내	■실내흡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해 설치된 흡연실과 룸 형태 시설은 룸 안에서만에서만 가능
	■흡연실 등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	■흡연실 등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

② 콜라텍, 무도장 방역수칙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**방역수칙 준수**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-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	■방역수칙 준수
	② **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**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**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**	
	■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(4주 보관 후 폐기) * 수기명부 불가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* 수기명부 불가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④ **마스크 착용**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**음식섭취 금지**	
	■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* 단, 물·무알콜 음료 섭취 시 예외	■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 * 단, 물·무알콜 음료 섭취 시 예외
	⑥ **손씻기**	
	■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, 손 씻을 수 있는 공간마련	■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**밀집도 완화**	
	■이용인원 기준 적용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** ***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포함** ■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 유지 안내	**■이용인원 제한 준수**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** ***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포함** -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
	⑧ **환기하기**	
	■일 3회 이상 시설 환기(대장작성)	
	⑨ **소독하기**	
	■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⑩ **기타**	
	■방역관리자 지정 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■비말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 - 소리지르기, 노래부르기, 구호 등
추가 수칙	① **공용공간**	
	■운동복, 수건 등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 ■탈의실, 샤워장 등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	■운동복, 수건 등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■탈의실, 샤워장 등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
	② **무도 시**	
	■상대방(파트너)과의 신체 접촉이 필수적인 무도의 경우, 춤추는 동안 계속 마스크 착용 안내 ■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※ 콜라텍(무도장)은 방역수칙 준수하며, 춤추기(무도) 가능	■상대방(파트너)과의 신체 접촉이 필수적인 무도의 경우, 춤추는 동안 계속 마스크 착용 ■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

③ 홀덤펍 방역수칙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**① 방역수칙 준수**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-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	■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
	■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-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* * 수기명부 불가	■전자출입명부 인증 -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* * 수기명부 불가
	④ 마스크 착용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손씻기	
	■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,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손 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⑥ 밀집도 완화	
	■이용인원 기준 적용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** ***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, 딜러 포함** ■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 유지 ■(식음료 취식)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**■ 춤추기(댄스홀/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),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및 안내**	■이용인원 제한 준수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** ***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, 딜러 포함** -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■(식음료 취식)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,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워 앉기 **■ 춤추기(댄스홀/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),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**
	⑦ 환기하기	
	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영업활동 전/후 반드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⑧ 소독하기	
	■일 1회 이상 소독 - 영업활동 전/후 반드시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⑨ 기타	
	■방역관리자 지정 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추가 수칙	**① 게임할 때**	
	■주사위,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딜러, 플레이어 장갑 착용 또는 손 소독하기(권고) * 딜러는 장갑 미착용시 게임 종료시마다 손씻기 또는 손소독 권고	■주사위,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전,후 손소독하기(권고)
	■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, 미설치 시 사람(플레이어)간 1m 거리두거나 한 칸씩 띄어 앉도록 안내	■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, 미설치 시 사람(플레이어)간 1m 거리두거나 한 칸씩 띄어 앉기
	② 시설 내 공용 장소	
	■흡연실,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	■흡연실,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

④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**① 방역수칙 준수**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-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	■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
	■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마스크 착용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음식제공 및 섭취 금지 등	
	■음식물 제공 및 섭취, 공연, 노래부르기 금지 및 안내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■음식물 섭취, 노래부르기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가능
	⑥ 손씻기	
	■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밀집도 완화	
	■이용인원 기준 적용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** ■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 유지	■이용인원 제한 준수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** -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
	⑧ 환기하기	
	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행사 등 영업활동 전/후 반드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	
	⑨ 소독하기	
	■일 1회 이상 소독 - 행사 등 영업활동 전/후 반드시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⑧ 기타	
	■방역관리자 지정 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추가 수칙	**① 시설 내 공용 장소**	
	■흡연실,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	■흡연실,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

⑤ 노래연습장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**① 방역수칙 준수**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-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* 출입구 등에 시설별 또는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	■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
	■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■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** 수기명부 불가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** 수기명부 불가
	④ 마스크 착용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음식섭취 금지	
	■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 * 물·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	■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* 물·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
	⑥ 손씻기	
	■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	■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밀집도 완화	
	■이용인원 기준 적용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** ■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 유지	**■이용인원 제한 준수**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**
	⑧ 환기하기	
	■개별 방마다 이용 전후 환기*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(10분 이상, 대장작성) * 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, 30분간 환기	
	⑨ **소독하기**	
	■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** 손님이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종료 직후 소독	
	⑩ **기타**	
	■방역관리자 지정 및 상주 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추가 수칙	① **마이크 사용 등**	
	■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■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	■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■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

⑥ 실내스탠딩공연장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**방역수칙 준수**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방역수칙 준수
	② **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**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**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**	
	■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**마스크 착용**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⑤ **음식섭취 금지**	
	■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 * 물·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	■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 * 물·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
	⑥ **손씻기**	
	■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	■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**밀집도 완화**	
	■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■이용인원 기준 적용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**	■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■이용인원 제한 준수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**
	⑧ **환기하기**	
	■공연 전후 환기(대장작성)	
	⑨ **소독하기**	
	■일 **1회 이상 소독**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⑩ **기타**	
	■방역관리자 지정 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■화장실 등 시설 내 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
추가 수칙	① **부대시설 및 공용공간**	
	■공연장 밖 로비(매표·예매장소)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, 식당 방역수칙 준수* *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■공용공간은 '시설 공용공간 수칙' 적용	■공연장 밖 로비(매표·예매장소)에서 취식하는 경우, 식당 방역수칙 준수* *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,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워 앉기
	② **대중음악 등 관람 시**	
	■침방울이 튀는 행위(기립합성·구호·합창) 금지 ■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■좌석 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■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	■침방울이 튀는 행위(기립합성·구호·합창) 하지 않기 ■지정된 좌석 이탈하지 않기 ■방역수칙 미준수 시 퇴장 조치에 협조

⑦ 식당·카페(일반음식, 휴게, 제과)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**① 방역수칙 준수**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-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*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	■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
	■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마스크 착용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- 착석하여 음식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안내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- 착석하여 음식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
	⑤ 손씻기	
	■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⑥ 밀집도 완화	
	■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	■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■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,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워 앉기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⑦ 환기하기	
	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	
	⑧ 소독하기	
	■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⑨ 기타	
	■방역관리자 지정 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추가 수칙	**① 이용시간 제한**	
	■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	■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(강력 권고) ■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
	② 춤추기, 음악소리, 테이블 이동 금지	
	■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안내 ■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■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	■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■테이블 간 이동 금지
	③ 공용집게 사용 등	
	■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■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	■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)

⑧ 파티룸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수칙	**① 방역수칙 준수**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
	■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마스크 착용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손씻기	
	■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	■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(권고)
	⑥ 밀집도 완화	
	■이용인원 기준 적용 **- 개별 방 면적 면적 4㎡당 1명** ■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- 이용자 간 2m(최소1m)거리 유지	**■ 이용인원 제한 준수** **- 개별 방 면적 4㎡당 1명** - 이용자 간 2m(최소1m)거리 유지
	⑦ 환기하기	
	■이용 전후 환기(대장작성)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⑧ 소독하기	
	■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⑨ 기타	
	■방역관리자 지정 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추가수칙	**① 부대시설, 공용공간 각 방역수칙 적용**	
	■음식 섭취 시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*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■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㎡이상)	■음식 섭취 시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* 공용집게· 접시·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■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,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워 앉기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㎡이상)
	■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	■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준수

3) 처분근거 :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의2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4) 처분사유 : 제천시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
5) 처분기간 : 2021. 5. 3.(월) 00:00 ~ 2021. 5. 23.(일) 24:00

6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. 5. 3. 00:00부터

3. 일반관리시설

1) 처분당사자 :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 전문점 책임자·종사자 및 이용자

<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 >

▲결혼식장 ▲장례식장 ▲돌잔치전문점 ▲목욕장업 ▲영화관 ▲공연장 ▲PC방 ▲오락실·멀티방 ▲실내체육시설 ▲스포츠경기(관람)장 ▲실외체육시설(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) ▲학원 등<학원·교습소·직업훈련기관(일반), 학원·교습소(관악기·노래·연기), 학원·교습소(댄스·무용), 학원·직업훈련기관(기숙형)> ▲독서실·스터디카페 ▲유원시설(놀이공원, 워터파크) ▲이·미용업 ▲백화점·대형마트 ▲종합소매업(300㎡ 이상)

* 돌잔치전문점 :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·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,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, 호텔, 예식장,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

2) 처분내용 :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에서 방역수칙 준수

① 결혼식장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**① 방역수칙 준수**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
	■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마스크 착용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⑤ 손씻기	
	■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⑥ 밀집도 완화	
	■이용인원 기준 적용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** ■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 유지 * 식당 등 부대시설의 경우 해당 방역수칙을 적용하되, 대기자 등 밀집되지 않도록 **개별결혼식단위로 식사시간대 또는 식사장소 및 동선을 구분하여 운영**	**■이용인원 제한 준수**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** ■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
	⑦ 환기하기	
	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을 통한 환기횟수 증가	
	⑧ 소독하기	
	■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⑨ 기타	
	■방역관리자 지정 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추가 수칙	**① 뷔페, 식당 이용 시**	
	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- 단,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■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제공	■방역수칙에 따라 안내된 좌석에 착석하기 ■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
	■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	■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	■식사 시 대화 자제 안내	■식사 시 대화 자제
	② 만남 시	
	■대화 시 마스크 착용 안내	■대화 시 마스크 착용
	■지인 간 신체 접촉(악수 등) 자제 안내	■지인 간 신체 접촉(악수 등) 자제
	③ 시설 내 공용 장소	
	■흡연실, 화장실, 휴게실 등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	■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

② 장례식장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**① 방역수칙 준수**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
	■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마스크 착용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■식사 전,후 마스크 착용 안내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■식사 전,후 마스크 착용
	④ 손씻기	
	■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⑤밀집도 완화	
	■이용인원 기준 적용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** ■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 유지	**■이용인원 제한 준수**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** ■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
	⑥ 환기하기	
	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⑦ 소독하기	
	■일 1회 이상 소독 - 조문객이 이용한 테이블 즉시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⑧ 기타	
	■방역관리자 지정 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추가 수칙	**① 식사 시**	
	■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	■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,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/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
	■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	■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	■식사 시 대화 자제 안내	■식사 시 대화 자제
	② 만남 시	
	■대화 시 마스크 착용 안내	■대화 시 마스크 착용
	■지인 간 신체 접촉(악수 등) 자제 안내	■지인 간 신체 접촉(악수 등) 자제
	③ 시설 내 공용 장소	
	■흡연실, 휴게실 등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	■흡연실, 휴게실 등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

③ 돌잔치전문점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**① 방역수칙 준수**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③ **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**	
	■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**마스크 착용**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* 식사, 기념촬영(행사주관 부모 및 아이) 시에만 잠시 미착용 허용(그 외 대화시 등에는 반드시 착용)	■행사주관 부모 포함 모든 참석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* 식사, 기념촬영(행사주관 부모 및 아이) 시에만 잠시 미착용(그 외 대화시 등에는 반드시 착용)
	④ **손씻기**	
	■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⑤ **밀집도 완화**	
	■**이용인원 기준 적용**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** ■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 유지	■**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인원 제한 준수**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** ■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
	⑥ **환기하기**	
	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	
	⑦ **소독하기**	
	■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⑧ **기타**	
	■방역관리자 지정 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추가 수칙	① **식사 시**	
	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■착석하고 테이블 간 이동자제 안내	■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,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/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 ■착석하고 테이블 간 이동자제
	■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	■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	■식사 시 대화 자제 안내	■식사 시 대화 자제
	② **만남 시**	
	■대화 시 마스크 착용 안내	■대화 시 마스크 착용
	■지인 간 신체 접촉(악수 등) 자제 안내	■지인 간 신체 접촉(악수 등) 자제
	③ **시설 내 공용공간**	
	■흡연실, 화장실, 휴게실 등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	■흡연실,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

④ 목욕장업

④-1 목욕장업(특별방역조치기간)

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▸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즉시 실시 (세신사, 이발사, 매점운영자, 관리점원 등) * 확진자 발생지역은 격주 검사 실시 (집단감염상황 종료시까지) ▸출입자 명부 관리 - 이용자 전자출입명부(QR체크인)* 인증 의무화 *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가능 * 본인확인(신분증 제시) 후 수기명부 작성 * 성년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 ▸이용자 발열체크 및 증상 관련 안내판* 게시 * 감기몸살,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(강력 권고) ▸'달 목욕(정기이용권)' 신규발급 금지 * 다만, 횟수권 할인구매는 가능 ▸이용시간 1시간 제한(강력 권고) 및 안내판 게시	▸전자출입명부(QR체크인)* 인증 의무화 *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이용가능 * 본인확인(신분증 제시) 후 수기명부 작성 * 성년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 ▸감기몸살,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(강력 권고) ▸이용시간 1시간 제한 준수(강력 권고) * 이·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▸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* 평상, 음료컵은 사용금지 ▸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▸마스크 착용

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* 이·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▸ 이용자의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* 평상, 음료컵은 사용금지 ▸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▸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▸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, 소독대장작성) ▸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찔질방 등 발한시설의 경우 환기횟수 증가 ▸ 방역관리자 지정 ▸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 ▸ 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 * 목욕장 앞에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인원 게시 ▸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* 시설 내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	▸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섭취 금지 ▸ 이용인원 제한 준수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

④-2 목욕장업(특별방역조치기간 종료 시)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**① 방역수칙 준수**	
	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-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- 찔질방 등 발한실의 경우 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 안내 및 발한실 입구에 인원 게시	■ 방역수칙 준수 ■ 시설 이용 전 이용가능 인원 확인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
	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마스크 착용	
	■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■ 탈의 후 들어가는 탕 안, 발한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안내	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■ 탕 안, 발한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
	⑤ 음식섭취 금지	
	■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* * 시설 내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	■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 * 시설 내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
	⑥ 손씻기	
	■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 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밀집도 완화	
	■ 찔질방 등 발한실의 경우 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 안내 ■ **이용가능 인원** **-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**	■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■ **이용인원 제한 준수**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**
	⑧ 환기하기	
	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찔질방 등 발한시설의 경우 환기횟수 증가	
	⑨ 소독하기	
	■ 일 **1회 이상 소독** - 소독대장 작성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⑩ **기타**	
	■방역관리자 지정 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추가 수칙	① **대화자제**	
	■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자제 ■탈의실 및 목욕탕 내 대화 자제 안내	■목욕탕 내에서 대화 자제 ■탈의실 및 목욕탕 내 대화 자제
	② **공용물품 사용 자제**	
	■공용물품(드라이기, 빗, 로션, 베개, 매트 등) 및 선풍기 사용 자제 안내	■공용물품(드라이기, 빗, 로션, 베개, 매트 등) 및 선풍기 사용 자제
	③ **부대시설 및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**	
	■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및 공용공간 수칙 준수 및 안내	■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및 공용공간 수칙 준수

⑤ 영화관·공연장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**방역수칙 준수**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방역수칙 준수
	② **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**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**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**	
	■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*** 예매자(단체예매시 예매자 1명)에 한해 명부작성 예외 및 안내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*** 예매자(단체예매시 예매자 1명)에 한해 명부작성 예외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④ **마스크 착용**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**음식섭취 금지**	
	■상영관,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 * 물·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	■상영관,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 * 물·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
	⑥ **손씻기**	
	■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	■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**밀집도 완화**	
	■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■**이용인원 제한 적용** **-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** ***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**	■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■**이용인원 제한 준수** **-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**
	⑧ **환기하기**	
	■영화상영 또는 공연 전후 환기(대장작성)	
	⑨ **소독하기**	
	■일 **1회 이상 소독**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⑩ **기타**	
	■방역관리자 지정 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 ■화장실 등 시설 내 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	■화장실 등 시설 내 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
추가 수칙	① **상영관 외부**	
	■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 로비(매표·예매장소)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, 식당 방역수칙 준수* *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	■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 로비(매표·예매장소)에서 취식하는 경우, 식당 방역수칙 준수* *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,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워 앉기
	② **대중음악 등 관람 시**	
	■침방울이 튀는 행위(기립합성·구호합창) 금지 ■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■좌석 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■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■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	■침방울이 튀는 행위(기립합성·구호합창) 하지 않기 ■지정된 좌석 이탈하지 않기 ■방역수칙 미준수 시 퇴장 조치에 협조 ■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

⑥ PC방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수칙	**① 방역수칙 준수**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
	■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마스크 착용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음식섭취 금지	
	■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(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*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	■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(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*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
	⑥ 손씻기	
	■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	■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밀집도 완화	
	■이용인원 제한 적용 **-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** *** 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**	**■이용인원 제한 준수** **-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기** *** 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**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⑧ 환기하기	
	■일 3회 이상 시설 환기(대장작성)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	
	⑨ 소독하기	
	■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⑩ 기타	
	■방역관리자 지정 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추가수칙	**① 공용공간**	
	■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	■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

⑦ 오락실·멀티방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수칙	**① 방역수칙 준수**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-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	■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
	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■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■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④ **마스크 착용**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**음식섭취 금지**	
	■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 * 물·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	■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* 물·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
	⑥ **손씻기**	
	■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	■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**밀집도 완화**	
	■**이용 가능 인원 제한 적용**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**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	■**이용인원 제한 준수**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**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
	⑧ **환기하기**	
	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■멀티방은 개별 방마다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 (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분, 대장작성)	
	⑨ **소독하기**	
	■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- 멀티방은 퇴실 후 소독	
	⑩ **기타**	
	■방역관리자 지정 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
⑧ 실내체육시설

⑧-1 고강도 유산소 중심 운동

탁구, 배드민턴, 스쿼시, 체조장(줄넘기장, 체조교실 등), 체육도장(무술류로서 겨루기 등으로 상대방과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), 풋살(경기하는 경우), 실내 농구(경기하는 경우), 수영장 등

⑧-1-1 탁구, 배드민턴 등 2명이 각각 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 등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**방역수칙 준수**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- 동시간대 이용가능인원 안내 및 게시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	■**방역수칙 준수**
	② **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**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**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**	
	■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**마스크 착용**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**음식섭취 금지**	
	■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 * 수영 시, 물·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	■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* 수영 시, 물·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
	⑥ **손씻기**	
	■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	■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**밀집도 완화**	
	■**이용인원 제한 적용**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6㎡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**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 안내	■**이용인원 제한 준수**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6㎡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**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⑧ **환기하기**	
	■ 일 3회 이상 시설 환기(대장작성)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	
	⑨ **소독하기**	
	■ 일 2회(오전/오후) 이상 또는 시설이용(강습종료) 후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⑩ **기타**	
	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 ■ 운동복, 수건 등 공용물품 제공시 소독 철저	■ 고강도 운동(숨이 차오르는 운동)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 * 운동 강도 정의 및 예시[참고] ■ 침방울이 튀는 행위(구호외치기, 구령 등) 금지 ■ 운동복, 수건 등은 개인물품 사용하기(권고)
추가 수칙	① **공용공간**	
	■ 탈의실(락커룸), 샤워실, 대기실, 체온유지실 등 부대시설 적정 사용인원 관리(한칸 띄워 사용 등) ■ 탈의실, 샤워장 등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	■ 탈의실, 샤워장 등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

⑧-1-2 GX류 운동(그룹댄스운동, 스피닝, 에어로빅, 핫요가, 체조교실, 줄넘기 등)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**방역수칙 준수**	
	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-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**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**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③ **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**	
	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**마스크 착용**	
	■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**음식섭취 금지**	
	■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)	■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)
	⑥ **손씻기**	
	■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	■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**밀집도 완화**	
	■ **이용인원 제한 적용**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6㎡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** * 시설 내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하는 경우, 면적 기준은 해당 구획된 장소만을 기준으로 함 *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	■ **이용인원 제한 준수**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6㎡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**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
	⑧ **환기하기**	
	■ 일 3회 이상 시설 환기(대장작성)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	
	⑨ **소독하기**	
	■ 일 2회(오전/오후) 이상 또는 시설이용(강습종료) 후 소독(시설별 차등적용)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⑩ **기타**	
	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추가 수칙	① **기타 수칙**	
		■ 고강도 운동(숨이 차오르는 운동)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
	■ 침방울이 튀는 행위(구호외치기, 구령 등) 금지 안내	■ 침방울이 튀는 행위(구호외치기, 구령 등) 금지
	② **공용공간**	
	■ 탈의실, 샤워장 등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 ■ 운동복, 수건 등 공용물품 제공시 소독 철저	■ 탈의실, 샤워장 등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준수 ■ 운동복, 수건 등은 개인물품 사용하기(권고)

⑧-1-3 체육도장(무술류: 태권도, 유도, 합기도, 특공무술, 택견 등)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**방역수칙 준수**	
	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-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**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**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**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**	
	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④ **마스크 착용**	
	■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**음식섭취 금지**	
	■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)	■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)
	⑥ **손씻기**	
	■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	■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**밀집도 완화**	
	■ **이용인원 제한 적용**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6㎡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**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	■ **이용인원 제한 준수**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6㎡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**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
	⑧ **환기하기**	
	■ 일 3회 이상 시설 환기(대장작성)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	
	⑨ **소독하기**	
	■ 일 2회(오전/오후) 이상 또는 시설이용(강습 종료) 후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⑩ **기타**	
	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■ 고강도 운동(숨이 차오르는 운동)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 * 운동 강도 정의 및 예시[참고] ■ 침방울이 튀는 행위(구호외치기, 구령 등) 금지
추가 수칙	① **기타 수칙**	
	■ 겨루기(대련, 시합 등) 등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있는 운동은 가급적 짧은 시간 진행 및 안내 * 1경기 당 5분 이내	■ 겨루기(대련, 시합 등) 등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있는 운동은 가급적 짧은 시간 진행 * 1경기 당 5분 이내
	② **공용공간**	
	■ 운동복, 수건 등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 ■ 탈의실, 샤워장 등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	■ 운동복, 수건 등은 개인물품 사용하기(권고) ■ 탈의실, 샤워장 등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

⑧-2 비교적 중·저강도 운동

피트니스 운동, 요가, 필라테스, 무도학원, 가상체험체육시설(스크린야구장, 스크린골프장 등), 볼링장, 당구장 등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**① 방역수칙 준수**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-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	■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
	■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마스크 착용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음식섭취 금지	
	■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)	■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)
	⑥ 손씻기	
	■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	■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밀집도 완화	
	■이용인원 제한 적용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6㎡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**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	**■이용인원 제한 준수**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6㎡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**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
	⑧ 환기하기	
	■일 3회 이상 시설 환기(대장작성)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⑨ 소독하기	
	■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⑩ 기타	
	■방역관리자 지정 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■고강도 운동(숨이 차오르는 운동)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 ■침방울이 튀는 행위(구령 등), 신체접촉 자제
추가 수칙	**① 기타수칙**	
	■(무도학원) -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장갑 및 마스크 착용 및 안내 -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	■(무도학원) -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장갑 및 마스크 착용 -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
	② 공용공간	
	■운동복, 수건 등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 ■탈의실, 샤워장 등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	■탈의실, 샤워장 등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 ■운동복, 수건 등은 개인물품 사용하기(권고)

⑨ 스포츠경기(관람)장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**① 방역수칙 준수**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
	■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안내 ■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제외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제외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④ **마스크 착용**	
	▪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▪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**음식섭취 금지**	
	▪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)	▪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)
	⑥ **손씻기**	
	▪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	▪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**밀집도 완화**	
	▪**이용인원 제한 적용** **- 수용가능 관객의 10% 이내 입장** ▪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안내 ▪사전예약제 운영 권고 ▪대기 시 등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안내 * 대기 줄을 서는 경우, 군집행사 등 개최 시 1m이상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	▪**이용인원 제한 준수** **- 수용가능 관객의 10% 이내 입장** ▪사전예약제 이용 권고 ▪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▪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안내
	⑧ **환기하기**	
	▪ 실내시설의 경우, 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▪ 경기 전·후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	
	⑨ **소독하기**	
	▪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- 경기 전·후 소독 실시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⑩ **기타**	
	▪방역관리자 지정 ▪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추가 수칙	① **공용공간**	
	▪공용공간 수칙 안내	▪공용공간 수칙 준수
	② **부대시설**	
	▪식당 등 부대시설은 각 시설 방역수칙 준수 안내 ▪관람석 외 구역에 음식섭취 가능 구역 마련(권고)	▪식당 등 부대시설은 각 시설 방역수칙 준수 ▪음식 섭취 가능 구역에서만 섭취
	③ **마스크 착용 강화**	
	▪응원단장은 최소한의 경기안내 가능, 그 외 함성지르기 등 육성 응원 금지	▪함성지르기 등 육성응원 금지

⑩ 실외체육시설(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)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**방역수칙 준수**	
	▪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▪방역수칙 준수
	② **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**	
	▪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▪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**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**	
	▪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▪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▪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**마스크 착용**	
	▪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▪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⑤ **음식섭취 금지**	
	■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■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	⑥ **손씻기**	
	■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손 소독하기(권고) 또는 손 씻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
	⑦ **밀집도 완화**	
	■이용인원 제한 적용 ■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안내 * 대기 줄을 서는 경우,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(최소1m)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	■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	⑧ **소독하기**	
	■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⑨ **기타**	
	■방역관리자 지정 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추가 수칙	① **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**	
	■ 흡연실, 화장실, 탈의실, 샤워실,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	■ 흡연실, 화장실, 탈의실, 샤워실,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준수
	② **공용물품 사용 최소화**	
	■ 가능한 한 개인물품(예. 라켓, 유니폼 등) 사용 권고	■ 가능한 한 개인물품(예. 라켓, 유니폼 등)사용
	③ **부대시설 이용**	
	■식당·카페 방역수칙 준수	■식당·카페 방역수칙 준수

⑪ 학원 등

⑪-1 학원·교습소·직업훈련기관(일반)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**방역수칙 준수**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방역수칙 준수
	② **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**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**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**	
	■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**마스크 착용**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**음식섭취 금지**	
	■음식섭취 금지 안내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■음식섭취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	⑥ **손씻기**	
	■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손 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**밀집도 완화**	
	■**이용인원 제한 적용**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6㎡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또는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** 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거리두기	■**이용인원 제한 준수**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6㎡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준수** ■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
	⑧ **환기하기**	
	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⑨ **소독하기**	
	■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⑩ **기타**	
	■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(종사자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등) ■종사자 일1회 자가진단 실시(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)	
추가 수칙	① **전일제 경우 식사**	
	■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·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, 식당 방역수칙 준수	
	② **샤워실, 탈의실이 있는 경우**	
	■ 공용공간 수칙 적용	

⑪-2 학원·교습소(관악기, 노래, 연기)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**방역수칙 준수**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방역수칙 준수
	② **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**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**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**	
	■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**마스크 착용**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⑤ **음식섭취 금지**	
	■음식섭취 금지 안내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■음식섭취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	⑥ **손씻기**	
	■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손 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**밀집도 완화**	
	■**이용인원 제한 적용**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6㎡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또는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** ■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거리두기	■**이용인원 제한 준수**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6㎡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준수** ■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
	⑧ **환기하기**	
	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	
	⑨ **소독하기**	
	■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⑩ **기타**	
	■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(종사자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등) ■종사자 일1회 자가진단 실시(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)	
추가 수칙	① **마이크 덮개**	
	■ 마이크 사용 시 덮개 사용 및 교체	
	② **연주, 노래, 연기 시**	
	■ 칸막이 안에서 실시	
	③ **착석 시**	
	■ 한 방향으로 좌석 배치	
	④ **샤워실, 탈의실이 있는 경우**	
	■ 공용공간 수칙 적용	

⑪-3 학원·교습소(댄스, 무용)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수칙	**① 방역수칙 준수**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
	■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마스크 착용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음식섭취 금지	
	■음식섭취 금지 안내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■음식섭취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	⑥ 손씻기	
	■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손 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밀집도 완화	
	■이용인원 제한 적용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6㎡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준수** 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거리두기	**■이용인원 제한 준수**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6㎡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준수** ■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
	⑧ 환기하기	
	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⑨ 소독하기	
	■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⑩ 기타	
	■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(종사자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등) ■종사자 일1회 자가진단 실시(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) ■운동복, 수건 등은 개인물품 사용권고	■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 ■운동복, 수건 등은 개인물품 사용하기
추가수칙	**① 춤출 때**	
	■파트너와 춤을 추는 경우 다른 무용자들과 1m 이상 거리 유지 안내	■파트너와 춤을 추는 경우 다른 무용자들과 1m 이상 거리 유지 안내
	② 샤워실, 탈의실이 있는 경우	
	■ 공용공간 수칙 적용	

⑪-4 학원·직업훈련기관(기숙형)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수칙	**① 방역수칙 준수**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
	■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④ **마스크 착용**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**음식섭취 금지**	
	■공용공간 내 음식섭취 금지 안내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■공용공간 내 음식섭취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	⑥ **손씻기**	
	■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**밀집도 완화**	
	■ **이용인원 제한 적용**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6㎡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준수** ■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**- 기숙사 밀도 조정(1인실 권고)**	■ **이용인원 제한 준수**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6㎡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준수** ■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거리두기
	⑧ **환기하기**	
	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	
	⑨ **소독하기**	
	■일 1회 이상 소독(시설별 차등적용)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⑩ **기타**	
	■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(종사자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등) ■종사자 일1회 자가진단 실시(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)	
추가 수칙	① **입소자, 종사자, 방문자에 대한 권고조치**	
	■입소자 외출 및 층간 이동 자제 안내	■입소자 외출 및 층간 이동 자제
	■방문자 시설 출입 자제 안내	■방문자 시설 출입 자제
	② **샤워실, 탈의실이 있는 경우**	
	■ 공용공간 수칙 적용	

⑫ 독서실·스터디카페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**방역수칙 준수**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방역수칙 준수
	② **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**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**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**	
	■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**마스크 착용**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**음식섭취 금지**	
	■음식섭취 금지 안내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*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(푸드존 등)에서만 섭취하도록 안내	■음식섭취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* 별도 지정공간(푸드존 등) 내에서만 섭취 가능
	⑥ **손씻기**	
	■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손 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**밀집도 완화**	
	■이용인원 제한 적용 **-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** **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** **※ 단체룸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%로 인원 제한**	■이용인원 제한 준수 **-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기** **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** **※ 단체룸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%로 인원 제한 준수** ■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
	⑥ 환기하기	
	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⑦ **소독하기**	
	■ 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⑧ **기타**	
	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
⑬ 유원시설

⑬-1 종합·일반·기타유원시설업의 놀이공원 * 키즈카페는 별도 수칙 적용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**방역수칙 준수**	
	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**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**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**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**	
	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**마스크 착용**	
	■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④ **손씻기**	
	■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■ 놀이시설 탑승구 손소독제 비치(권고) - 이용 전후 손소독제 사용하도록 안내	■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 ■ 놀이기구 이용 전·후 손소독제로 손소독하기(권고)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⑤**밀집도 완화**	
	■ **이용인원 제한 적용** **- 수용 가능인원의 50%로 인원 제한** 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안내 * 대기 줄을 서는 경우,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(최소1m)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	■ **이용인원 제한 준수** **- 수용 가능인원의 50%로 인원 제한 준수** ■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	⑥ **환기하기**	
	■ 실내시설의 경우, 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	
	⑦ **소독하기**	
	■ 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⑧ **기타**	
	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추가 수칙	① **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**	
	■ 흡연실, 화장실, 탈의실, 샤워실,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	■ 흡연실, 화장실, 탈의실, 샤워실,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준수
	② **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**	
	■ 식당, 카페, 공연장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방역 수칙 적용	■ 식당, 카페, 공연장 등의 부대시설 방역 수칙 준수

⑬-2 종합·일반·기타유원시설업의 워터파크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**방역수칙 준수**	
	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**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**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
	■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마스크 착용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손씻기	
	■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소독 또는 손씻기
	⑥ 밀집도 완화	
	■이용인원 제한 적용 **- 수용 가능인원의 50%로 인원 제한** ■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안내 * 대기 줄을 서는 경우,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(최소1m)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	**■이용인원 제한 준수** **- 수용 가능인원의 50%로 인원 제한 준수** ■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■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	⑦ 환기하기	
	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	
	⑧ 소독하기	
	■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⑨ 기타	
	■방역관리자 지정 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추가 수칙	**①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**	
	■흡연실, 화장실, 탈의실, 샤워실, 휴게실,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	■흡연실, 화장실, 탈의실, 샤워실, 휴게실, 등 공용공간 수칙 준수
	②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	
	■식당, 카페, 공연장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방역 수칙 적용	■식당, 카페, 공연장 등의 부대시설 방역 수칙 준수

⑭ 이·미용업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**① 방역수칙 준수**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
	■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마스크 착용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음식섭취 금지	
	■ 음식물 섭취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■음식물 섭취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	⑥ 손씻기	
	■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■종사자는 수시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	■손 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밀집도 완화	
	■이용인원 제한 적용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** - 좌석,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	**■이용인원 제한 준수** **-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** ■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
	⑧ 환기하기	
	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⑨ **소독하기**	
	■ 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⑩ **기타**	
	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추가 수칙	① **대화자제**	
	■ 운영자,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,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	■ 면도나 메이크업, 얼굴관리 등 부득이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 대화 자제, 이후 바로 마스크 착용

⑮ 백화점·대형마트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**방역수칙 준수**	
	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**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**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**마스크 착용**	
	■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④ **손씻기**	
	■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 손 소독하기(권고) 또는 손 씻기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소독 또는 손씻기
	⑤ **환기하기**	
	■ 실내시설의 경우, 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■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, 영업시간 중 상시가동 *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⑥ **소독하기**	
	■ 일 3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(쇼핑용카트) 등	
	⑦ **기타**	
	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추가 수칙	① **공용공간 등 방역수칙 준수**	
	■ 흡연실, 화장실, 탈의실, ,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	■ 흡연실, 화장실, 탈의실, ,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준수
	② **휴게공간 제공 최소화**	
	■ 휴게공간 제공 최소화	■ 휴게공간 이용 최소화
	③ **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**	
	■ 식당, 카페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방역 수칙 적용	■ 식당, 카페 등의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

⑯ 종합소매업(300㎡ 이상 규모)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**방역수칙 준수**	
	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**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**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**마스크 착용**	
	■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④ **손씻기**	
	■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 손 소독하기(권고) 또는 손 씻기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소독 또는 손씻기
	⑤ **환기하기**	
	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- 창문, 출입문 등 상시 개방(권고)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⑥ **소독하기**	
	■ 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(쇼핑용카트) 등	
	⑦ **기타**	
	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
3) 처분근거 :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의2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4) 처분사유 : 제천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
5) 처분기간 : 2021. 5. 3.(월) 00:00 ~ 2021. 5. 23.(일) 24:00

6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. 5. 3. 00:00부터

4. 다중이용시설 중 기타시설

1) 처분당사자 : 제천시내 소재하는 공공기관·행정복지센터, 아파트내 편의시설, 숙박시설, 미술관·박물관, 도서관, 키즈카페, 마사지업·안마소 책임자·종사자 및 이용자

2) 처분내용 :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중단 및 이용인원 제한 등

① 공공기관·행정복지센터 : 문화·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권고

② 아파트내 편의시설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▸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	▸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▸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▸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▸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▸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▸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	▸ 마스크 착용 ▸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 ▸ 이용인원 제한 준수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

③ 숙박시설

< 숙박시설 적용 대상 >

-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(호텔, 모텔, 여관 등)
-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(관광호텔, 호스텔 등)

③-1 콘도, 리조트, 호텔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수칙	① **방역수칙 준수**	
	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**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**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**마스크 착용**	
	■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④ **손씻기**	
	■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손 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⑤ **밀집도 완화**	
	■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	■공용공간 내 머무는 시간 최소화하기
	⑥ **환기하기**	
	■ (공용공간)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■ (객실) 퇴실 후 환기	■객실 내 수시 환기
	⑦ **소독하기**	
	■(객실) 퇴실 후 소독 (공용공간) 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⑧ **기타**	
	■방역관리자 지정 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추가 수칙 ①	① **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**	
	■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안내	■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
추가 수칙 ②	② **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**	
	■ 흡연실, 화장실, 탈의실, 샤워실,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	■ 흡연실, 화장실, 탈의실, 샤워실,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준수
★ 추가 수칙	**- 행사·파티 등 주최 금지** *** 바비큐 파티, 클럽 파티,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** **-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수용 금지** *** 파티 적발 시 퇴실조치 안내문 게시** **-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 금지**	**- 숙박시설 주관 행사·파티 참여금지** **-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숙박 금지** **-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이용 금지**

③-2 민박, 펜션, 게스트하우스 등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**방역수칙 준수**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방역수칙 준수
	② **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**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**마스크 착용**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**손씻기**	
	■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손 씻기, 손소독 하기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(권고)
	⑥ **밀집도 완화**	
	■식사 등 공용공간 이용은 가급적 일행 단위로 이용하도록 안내	■공용공간(식당, 부엌, 세탁실, 휴게실 등)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고, 대화 자제하기
	⑦ **환기하기**	
	■ (공용공간)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■ (객실) 퇴실 후 환기	
	⑧ **소독하기**	
	■(객실) 퇴실 후 소독 (공용공간) 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■공용물품(식기 등)은 투숙객이 사용한 뒤 소독 후 제공	
	⑨ **기타**	
	■방역관리자 지정 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추가 수칙	**- 행사·파티 등 주최 금지** *** 바비큐 파티, 클럽 파티,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** **-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수용 금지** *** 파티 적발 시 퇴실조치 안내문 게시** **-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 금지**	**- 숙박시설 주관 행사·파티 참여금지** **-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숙박 금지** **-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이용 금지**

④ 미술관·박물관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**방역수칙 준수**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방역수칙 준수
	② **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**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**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**	
	■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**마스크 착용**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**음식섭취 금지**	
	■음식 제공 금지 및 섭취 금지 안내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■음식 섭취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	⑥ **손씻기**	
	■ 손 소독제 비치 및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 * 공용용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**밀집도 완화**	
	■사전예약제 운영 - 예약시스템 미설치 시 출입구에 이용가능 인원 안내 ■관람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 안내	■관람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⑧ **환기하기**	
	■1일 3회 이상 환기	
	⑨ **소독하기**	
	■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⑩ **기타**	
	■방역관리자 지정 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추가 수칙	① **부대시설 이용**	
	■식당·카페 방역수칙 준수	■식당·카페 방역수칙 준수

⑤ 도서관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**방역수칙 준수**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방역수칙 준수
	② **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**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**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**	
	■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④ **마스크 착용**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**음식섭취 금지**	
	■음식 제공 금지 및 섭취 금지 안내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■음식 섭취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	④ **손씻기**	
	■ 손 소독제 비치 및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 * 공용용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⑤**밀집도 완화**	
	■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	■시설 이용 전 이용가능 인원 확인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
	⑥ **환기하기**	
	■하루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	
	⑦ **소독하기**	
	■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■이용도서 소독하기	
	⑧ **기타**	
	■방역관리자 지정 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추가 수칙	① **교육행사견학**	
	■교육행사 운영 시 참가자 거리두기 준수 ■단체견학 자제	■교육행사 운영 시 참가자 거리두기 준수 ■단체견학 자제
	② **부대시설 이용**	
	■도서관 내 식당·카페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, 식당·카페 방역수칙 준수 안내	■도서관 내 식당·카페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, 식당·카페 방역수칙 준수

⑥ 키즈카페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**방역수칙 준수**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방역수칙 준수
	② **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**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**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**	
	■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■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**마스크 착용**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**손씻기**	
	■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손 소독하기(권고) 또는 손 씻기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소독 또는 손씻기
	⑥ **밀집도 완화**	
	■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안내 * 대기 줄을 서는 경우 2m(최소1m)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■기타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키즈카페는 유원시설업에 따른 놀이공원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	■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	⑦ **환기하기**	
	■ 실내시설의 경우, 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- 창문, 출입문 등 상시 개방(권고)	
	⑧ **소독하기**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■ 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	
	⑨ **기타**	
	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추가 수칙	① **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**	
	■ 화장실, 탈의실,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	■ 화장실, 탈의실,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준수
	② **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**	
	■ 식당, 카페, 공연장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방역 수칙 적용	■ 식당, 카페, 공연장 등의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
	③ **놀이기구 및 장난감 등 공용물품 방역수칙 준수**	
	■ 놀이기구 및 장난감에 대한 소독 철저	

⑦ 마사지업, 안마소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**방역수칙 준수**	
	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**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**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**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**	
	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**마스크 착용**	
	■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⑤ **음식섭취 금지**	
	■ 시설 내 음식물 섭취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■ 시설 내 음식물 섭취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	⑥ **손씻기**	
	■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■ 종사자는 수시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	■ 손 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**밀집도 완화**	
	■ 이용인원 제한 적용 -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	
	⑧ **환기하기**	
	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	
	⑨ **소독하기**	
	■ 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⑩ **기타**	
	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추가 수칙	① **대화자제**	
	■ 운영자,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,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	■ 얼굴관리 등 부득이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 대화 자제, 이후 바로 마스크 착용

3) 처분근거 :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의2호, 제49조 제3항(숙박시설), 제83조 제2항 및 제4항

4) 처분사유 : 제천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
5) 처분기간 : 2021. 5. 3.(월) 00:00 ~ 2021. 5. 23.(일) 24:00

6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. 5. 3. 00:00부터

5. 종교시설

1) 처분당사자 : 제천시내 종교시설* 책임자·종사자 및 이용자

* 기독교, 천주교, 불교, 원불교, 유교, 이슬람교 등이 운영하는 시설

2) 처분내용

- 정규 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좌석수 30%이내 인원 참여
- 모임·식사 금지
-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아래 방역수칙 준수

① 타지역 이동·방문 및 외부인 출입 자제 권고, ② 공용물품 사용 금지 권고, ③ 음식 섭취 시 방역 수칙 준수

- **종교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카페 등 편의시설 운영 금지**

※ 부득이하게 외부인 기도원 방문 시 마스크착용 의무화 준수

* 확진자 발생시 해당 종교시설 집합금지명령

① 종교시설 방역수칙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**① 방역수칙 준수**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■개별 공간(예배실 등)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	■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
	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마스크 착용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⑤ 음식섭취 금지	
	■음식 제공 금지 및 섭취 금지 안내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■음식 섭취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	⑥ 손씻기	
	■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밀집도 완화	
	■이용인원 제한 적용 **- 좌석 수 기준 30%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*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% 이내 참여 가능** *** 단 100석 미만의 경우 30명 이내 참여 가능** **-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(숙박포함)*, 식사는 모두 금지** **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심방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,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** ※ 특히, **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** 등에서는 **숙식 금지 정규 종교활동** 외에 **모든 모임·행사(숙박포함) 주최** 및 **음식 제공 금지** ■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**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유지** - **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** 거리 유지를 전제로 **좌석** 또는 **바닥면**에 **표시**하여 **이용자**에 안내	■이용인원 제한 준수 **- 좌석 수 기준 30%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*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% 이내 참여 가능** *** 단 100석 미만의 경우 30명 이내 참여 가능** **-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(숙박포함)*, 식사는 모두 금지** **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심방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,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** ※ 특히, **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** 등에서는 **숙식 금지 정규 종교활동** 외에 **모든 모임·행사(숙박포함) 주최** 및 **음식 제공 금지** ■시설 이용 전 이용가능 인원 확인 - 수칙 준수하여 참여
	⑧ 환기하기	
	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종교행사 전/후 반드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	
	⑨ 소독하기	
	■일 1회 이상 소독 - 종교행사 전/후 반드시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책자,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⑩ 기타	
	▪방역관리자 지정 ▪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추가 수칙	① 비말발생(침 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) 금지	
	▪큰 소리로 함께 기도, 암송하는 행위 금지, 성가대(독창 제외) 금지 안내	▪큰 소리로 함께 기도, 암송하는 행위 금지, 성가대(독창 제외) 금지
	② 공용물품 등 제공금지	
	▪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	▪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
	③ 시설 내 공용 장소	
	▪휴게실, 탕비실, 흡연실,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	▪흡연실,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

3) 처분근거 :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의2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4) 처분사유 : 제천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
5) 처분기간 : 2021. 5. 3.(월) 00:00 ~ 2021. 5. 23.(일) 24:00

6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. 5. 3. 00:00부터

6. 사회복지시설(생활시설) 중 아래 대상시설

1) 처분당사자 : 제천시내 사회복지시설 중 아래 대상시설*의 시설장(방역관리자) 및 종사자

*** 대상시설 : 노인주야간보호센터, 양로시설(공동생활가정 포함), 장애인거주시설(단기 및 공동생활가정포함), 노숙인시설, 아동복지생활시설, 여성폭력관련시설, 한부모시설, 청소년 시설**

2) 처분내용 :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수칙 준수

① 사회복지시설(생활시설)

시설장(방역관리자)	종사자(시설장 포함)
▸ 종사자 및 이용자 관리 - 일 2회 이상 발열, 호흡기 증상확인 - 의심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 즉시신고 - 해외 여행력 있는 종사자·이용자 2주간 출근금지 또는 시설 이용 중단 ▸ 종사자 및 이용자 감염병 예방교육(주1회 이상) ▸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면 면회 금지 ▸ 시설 내 환경·위생 관리(환기 일 2회 이상, 방역물품 비치 등) ▸ 확진자 발생시 코호트격리 등	▸ 출퇴근 외 타 시도 이동·방문 금지 권고 ▸ 출퇴근 외 타 시군 이동·방문 자제 권고 ▸ 집회 참여 및 대면 종교활동 자제 권고 ▸ 장례식장·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 자제 권고 ▸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권고 ▸ 외부인 접촉제한 권고 * 불가피한 경우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접촉 ▸ 2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(시설내 상근하는 자 포함*) ※ 양로시설(공동생활가정 포함), 노인주야간보호센터, 장애인 거주시설은 1주마다 PCR진단검사 의무화, 의심증상** 발생시 신속항원검사 활용하여 추가검사 ※ 아동복지생활시설 의무화 제외(단, 신규 입소 아동의 경우 입소 시 진단검사 의무화) ※ 선제검사 시 의심증상 없을 경우 자가격리 없이 업무복귀 가능 * 시설 내 상주하는 자(사회복무요원 등)는 종사자에 준하여 PCR 진단검사 의무 ** 발열, 기침, 호흡곤란 및 폐렴 등 호흡기 증상, 그 외 가래, 인후통, 두통, 설사 등 ※ PCR 검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변경가능

3) 처분근거 :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의2호, 제83조 제2항 및 제4항

4) 처분사유 : 제천시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
5) 처분기간 : 2021. 5. 3.(월) 00:00 ~ 2021. 5. 23.(일) 24:00

6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. 5. 3. 00:00부터

7. 사회복지시설(생활시설) 중 노인요양시설

1) 처분당사자 : 제천시내 사회복지시설 중 요양시설의 시설장(방역관리자) 및 종사자

2) 처분내용 :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수칙 준수

① 요양시설

시설장(방역관리자)	종사자(시설장 포함)
▸ 종사자 및 이용자 관리 - 일 2회이상 발열, 호흡기 증상 확인 - 의심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 즉시 신고 - 발열, 기침 등 의심증상시 종사자는 업무배제, 이용자는 서비스 중단, 입소자는 격리 조치 - 해외 여행력 있는 종사자 및 이용자는 2주간 출근금지 또는 시설 이용 중단 ▸ 신규 종사자 및 환자 입소시 48시간 내 PCR검사 의무화 ▸ 신규 환자 입소시 별도 격리병실에서 2주간 관리 후 공동병실로 이동 권고 ▸ 휴게실 일시폐쇄 권고 ▸ 종사자의 층간(또는 병동간) 이동제한 권고 - 간호조무사, 요양보호사 1개층(또는 병동) 전담제 시행 ▸ 종사자 및 이용자 감염병 예방 교육 - 코로나19 질병정보, 예방수칙, 행동요령 등 교육 실시**(1일 2회 이상)** * 방송, 문자 활용 - 코로나19 예방수칙 등 홍보물 시설 내 부착 ▸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면 면회 금지 ▸ 시설 내 환경 위생 관리 - 화장실, 세면실 공동 이용 자제 권고 - 시설 내 공기정화 및 환기 실시(일 2회 이상) - 시설 내 마스크, 체온계,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- 사람의 손에 자주 닿는 장소,물건*에 대한 소독 강화(일 2회 이상) * 출입문, 엘리베이터, 책상, 탁자, 전화기, 키보드 등 ▸ 종사자 및 이용자 건강상태, 진단검사 실시여부, 시설 방역현황 등을 시군 담당공무원에게 보고 (일 1회 이상) ▸ 확진자 발생 대비 확진자 및 접촉자를 격리할 수 있는 별도 격리공간 설치 권고 ▸ 비말감염 차단을 위한 간이차단막 설치 권고 ▸ 확진자 발생시 코호트 격리 ▸ 환진자 발생시 환자의 병실간 이동 금지명령 즉시 시행, 비노출 환자 분산전원 조치 ▸ 기타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철저	▸ 출퇴근 외 타 시군 이동·방문 금지 권고 ▸ 집회 참여,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▸ 장례식장,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※ 가족*의 장례식, 결혼식 참여는 예외 적용 *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▸ 불요불급한 외출 금지 권고 ▸ 외부인 접촉제한 권고 * 불가피한 경우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접촉 ▸ 종사자 간 공동 식사, 공동 탈의실 이용금지 * 이용인원의 1/3로 제한 ▸ 종사자간 카풀 제한 권고 ▸ **2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(시설내 상근하는 자 포함*), 의심증상**이 발생하거나 대면 종교활동 참여시 신속항원검사 활용 (종사자의 동거가족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 권고)** * 시설 내 상주하는 자(사회복무요원 등)는 종사자에 준하여 PCR 진단검사 의무 ** 발열,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호흡기 증상, 그 외 가래, 인후통, 두통, 설사 등 ※ 선제검사 시 의심증상 없을 경우 자가격리 없이 업무복귀 가능 ▸ 기타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철저 ※ PCR 검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변경가능

3) 처분근거 :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의2호, 제83조 제2항 및 제4항

4) 처분사유 : 제천시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
5) 처분기간 : 2021. 5. 3.(월) 00:00 ~ 2021. 5. 23.(일) 24:00

6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. 5. 3. 00:00부터

8. 사회복지이용시설

1) 처분당사자 : 제천시내 사회복지이용시설 시설장(방역관리자), 종사자

* 휴관시설 제외(단, 긴급돌봄, 생산·판매, 의료서비스 제공시설 포함)

2) 처분내용 :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 운영

- 사회복지이용시설 중 노인복지관, 장애인복지관, 사회복지관 이용자 음식물 섭취 금지
- 경로당은 아래 방역수칙 준수

① 경로당 입실 전 발열체크 및 방문자 명부 작성, ② 마스크 상시 착용, ③ 개인 간 1m 이상 거리 두기, ④ 음식물 섭취 금지, ⑤ 경로당에서 숙박 금지, ⑥ 운영시간 : 10:00 ~ 16:00

3) 처분근거 :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의2호, 제83조 제2항 및 제4항

4) 처분사유 : 제천시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
5) 처분기간 : 2021. 5. 3.(월) 00:00 ~ 2021. 5. 23.(일) 24:00

6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. 5. 3. 00:00부터

9. 요양병원

1) 처분당사자 : 제천시내 요양병원 병원장(방역관리자), 종사자

2) 처분내용 :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수칙 준수

① 요양병원

병원장(방역관리자)	종사자(병원장 포함)
▸ 종사자 및 입소자 관리 - 일 2회이상 발열, 호흡기 증상 확인 - 의심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 즉시 신고 - 발열, 기침 등 의심증상시 종사자는 업무배제, 입소자는 격리 조치 - 해외 여행력 있는 종사자 및 입소자 2주간 출근금지 또는 시설 입소 불가 ▸ 신규 종사자 및 환자 입원시 48시간 내 PCR검사 의무화 ▸ 신규 환자 입원시 별도 격리병실에서 2주간 관리 후 공동병실로 이동 권고 ▸ 휴게실 운영시 종사자간 교차 이용 권고 ▸ 종사자의 층간(또는 병동간) 이동제한 권고 - 간호조무사, 요양보호사 1개층(또는 병동) 전담제 시행 ▸ 종사자 및 입소자 감염병 예방 교육 - 코로나19 질병정보, 예방수칙, 행동요령 등 교육 실시**(1일 2회 이상)** * 방송, 문자 활용 - 코로나19 예방수칙 등 홍보물 시설 내 부착 ▸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면 면회 금지, 비접촉 면회 허용 ▸ 시설 내 환경 위생 관리 - 화장실.세면실 공동 이용 자제 권고 - 시설 내 공기정화 및 환기 실시(일 2회 이상) - 시설 내 마스크, 체온계,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- 사람의 손에 자주 닿는 장소.물건*에 대한 소독 강화(일 2회 이상) * 출입문, 엘리베이터, 책상, 탁자, 전화기, 키보드 등 ▸ 종사자 및 입소자 건강상태, 진단검사 실시여부, 시설 방역현황 등을 시군 담당공무원에게 보고 (일 1회 이상) ▸ 확진자 발생 대비 확진자 및 접촉자를 격리할 수 있는 별도 격리공간 설치 권고	▸ 출퇴근 외 타 시군 이동·방문 금지 권고 ▸ 집회 참여,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▸ 장례식장,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※ 가족*의 장례식, 결혼식 참여는 예외 적용 *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▸ 불요불급한 외출 금지 권고 ▸ 외부인 접촉제한 권고 * 불가피한 경우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접촉 ▸ 종사자 간 공동 식사, 공동 탈의실 이용금지 * 이용인원의 1/3로 제한 ▸ 종사자간 카풀 제한 권고 ▸ **2주 1회 PCR 진단검사 의무화, 의심증상* 발생시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** * 발열,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호흡기 증상, 그 외 가래, 인후통, 두통, 설사 등 ▸ 기타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철저 ※ PCR 검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변경가능

병원장(방역관리자)	종사자(병원장 포함)
▸ 비말감염 차단을 위한 간이차단막 설치 권고 ▸ 확진자 발생시 코호트 격리 ▸ 환진자 발생시 환자의 병실간 이동 금지명령 즉시 시행, 비노출 환자 분산.전원 조치 ▸ 기타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철저	

3) 처분근거 :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의2호, 제83조 제2항 및 제4항

4) 처분사유 : 제천시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
5) 처분기간 : 2021. 5. 3.(월) 00:00 ~ 2021. 5. 23.(일) 24:00

6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. 5. 3. 00:00부터

10. 정신병원

1) 처분당사자 : 제천시내 정신병원 병원장(방역관리자), 종사자

2) 처분내용 :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수칙 준수

① 정신병원

병원장(방역관리자)	종사자(병원장 포함)
▸ 종사자 및 입소자 관리 - 일 2회이상 발열, 호흡기 증상 확인 - 의심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 즉시 신고 - 발열, 기침 등 의심증상시 종사자는 업무배제, 입소자는 격리 조치 - 해외 여행력 있는 종사자 및 입소자 2주간 출근금지 또는 시설 입소 불가 ▸ 신규 종사자 및 환자 입원시 48시간 내 PCR검사 의무화 ▸ 신규 환자 입원시 별도 격리병실에서 2주간 관리 후 공동병실로 이동 권고 ▸ 휴게실 운영시 종사자간 교차 이용 권고 ▸ 종사자의 층간(또는 병동간) 이동제한 권고 - 간호조무사, 요양보호사 1개층(또는 병동)	▸ 출퇴근 외 타 시군 이동·방문 금지 권고 ▸ 집회 참여,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▸ 장례식장,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※ 가족*의 장례식, 결혼식 참여는 예외 적용 *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▸ 불요불급한 외출 금지 권고 ▸ 외부인 접촉제한 권고 * 불가피한 경우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접촉 ▸ 종사자 간 공동 식사, 공동 탈의실 이용금지 * 이용인원의 1/3로 제한 ▸ 종사자간 카풀 제한 권고 ▸ 1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, 의심증상*이 발생하거나 대면 종교활동 참여시 신속항원검사 활용 1주에 1회 추가 검사

병원장(방역관리자)	종사자(병원장 포함)
전담제 시행 ▸ 종사자 및 입소자 감염병 예방 교육 - 코로나19 질병정보, 예방수칙, 행동요령 등 교육 실시(1일 2회 이상) * 방송, 문자 활용 - 코로나19 예방수칙 등 홍보물 시설 내 부착 ▸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면 면회 금지, 비접촉 면회 허용 ▸ 시설 내 환경 위생 관리 - 시설 내 공기정화 및 환기 실시(일 2회 이상) - 시설 내 마스크, 체온계,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- 사람의 손에 자주 닿는 장소.물건*에 대한 소독 강화(일 2회 이상) * 출입문, 엘리베이터, 책상, 탁자, 전화기, 키보드 등 ▸ 종사자 및 입소자 건강상태, 진단검사 실시여부, 시설 방역현황 등을 시군 담당공무원에게 보고 (일 1회 이상) ▸ 확진자 발생 대비 확진자 및 접촉자를 격리할 수 있는 별도 격리공간 설치 권고 ▸ 비말감염 차단을 위한 간이차단막 설치 권고 ▸ 확진자 발생시 코호트 격리 ▸ 환진자 발생시 환자의 병실간 이동 금지명령 즉시 시행, 비노출 환자 분산.전원 조치 ▸ 기타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철저	* 발열,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호흡기 증상, 그 외 가래, 인후통, 두통, 설사 등 (종사자의 동거가족은 1주마다 PCR 진단검사 권고) ▸ 기타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철저 ※ PCR 검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변경가능

3) 처분근거 :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의2호, 제83조 제2항 및 제4항

4) 처분사유 : 제천시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
5) 처분기간 : 2021. 5. 3.(월) 00:00 ~ 2021. 5. 23.(일) 24:00

6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. 5. 3. 00:00부터

11. 고위험 사업장(콜센터, 물류센터)

1) 처분당사자 : 제천시내 고위험 사업장 책임자·종사자 및 이용자

2) 처분내용 : 대상시설에서 아래 방역수칙 준수

① 콜센터

구분	방역관리자·운영자 수칙	종사자(근로자)·방문자 수칙
공통 수칙	**① 방역수칙 준수**	
	■ 전체 근로자*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* 협력업체 근로자, 파견·용역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근로자 (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) 포함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**■ 증상확인 협조, 증상 있을 경우 출입하지 않기**
	③ 방문자(근무자 외)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
	■ 모든 방문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**■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**	**■ 모든 방문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**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마스크 착용	
	■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	
	■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■ 사업장 상황에 맞게 근로자의 마스크 여분 충분히 확보 및 비치	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음식섭취 자제	
	■ 식사공간 이외에서 음식물 자제 안내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■ 식사공간 이외에서 음식물 자제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	⑥ 손씻기	
	■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(공간 당 최소 1개 이상)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**■ 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**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밀집도 완화	
	■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■ 근로자 간 2m(최소1m)간격 유지	■ 근로자 간 2m(최소1m)간격 유지

구분	방역관리자·운영자 수칙	종사자(근로자)·방문자 수칙
	■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- 식사시간을 2개조 이상으로 분리 운영(운영대장 작성) * 가급적 조별 인원 균등분할 *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안내	■ 점심시간 시차제 참여 - 조별 식사시간 준수 *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
	⑧ **환기하기**	
	■ **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**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구를 활용하여 환기횟수 증가 ■ **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 가동**(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) 하고 자연환기 병행 *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	■ 회의, 작업 중 지정된 시간에 환기 후 근무
	⑨ **소독하기**	
	■ **일 1회 이상 소독**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책자, 공용물품(전화기, 헤드셋, 마이크 등)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, 사무용기기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■ 개인별 사무공간(책상 등) 및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개인물품 소독 철저 ■ 공용물품(전화기, 헤드셋, 마이크 등) 소독 후 사용하기
	⑩ **기타**	
	■ **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** ■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(대장작성) ■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 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*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(병가, 연가휴가 등) 활용하도록 권장	■ 증상확인 협조 ■ 증상 있을 경우, 방역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근 또는 출근자제
추가 수칙	① **근무형태**	
	■ 유연근무제(재택근무, 시차출퇴근 등), 휴가제도(가족돌봄휴가, 연차휴가, 병가 등)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	■ 유연근무제(재택근무, 시차출퇴근 등), 휴가제도(가족돌봄휴가, 연차휴가, 병가 등)를 적극 활용
	■ 업무특성 상 업무부담이 가중되는	■ 충분한 휴게시간 이용

구분	방역관리자·운영자 수칙	종사자(근로자)·방문자 수칙
	점을 반영하여,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 -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외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	
	② **회의 및 워크숍, 교육, 연수, 출장, 행사**	
	■ 출장 최소화, 회의 및 워크숍, 교육, 연수,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(영상)으로 실시 ■ 대면으로 회의, 워크숍, 교육, 연수 등 개최 시 개인위생수칙(마스크착용, 손 위생, 거리유지 등) 준수 안내 ■ 사업장 내 모임, 회식 자제	■ 출장 최소화 하기, 회의, 워크숍, 교육, 연수,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(영상)으로 참여 ■ 대면으로 회의, 워크숍, 교육, 연수 등 참여 시 개인위생수칙(마스크착용, 손 위생, 거리유지 등) 준수 ■ 사업장 내 모임, 회식 자제
	③ **구내식당, 통근버스, 기숙사, 시설내 공용공간**	
	■ 해당 방역수칙 준수 안내	■ 해당 방역수칙 준수

② 물류센터

구분	방역관리자·운영자 수칙	종사자(근로자)·방문자 수칙
공통수칙	① **방역수칙 준수**	
	■ **전체 근로자*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** * 협력업체 근로자, 파견·용역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근로자 (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) 포함	■ **방역수칙 준수**
	② **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**	
	■ **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**	■ **증상확인 협조, 증상 있을 경우 출입하지 않기**
	③ **방문자(근무자 외)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**	
	■ **모든 방문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**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■ **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**	■ **모든 방문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**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**마스크 착용**	

구분	방역관리자·운영자 수칙	종사자(근로자)·방문자 수칙
	■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**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**	
	■ 모든 직원 **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** ■ 사업장 상황에 맞게 근로자의 마스크 여분 충분히 확보 및 비치 * 특히, 마스크 오염 시 즉시 교체 착용 안내	■ **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** * 특히, 마스크 오염 시 즉시 교체 착용
	⑤ **음식섭취 자제**	
	■ 식사공간 이외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안내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■ 식사공간 이외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	⑥ **손씻기**	
	■ 사업장 내 **손 소독제 비치**(공간 당 최소 1개 이상) 또는 **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**	■ **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**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**밀집도 완화**	
	■ 작업대 등은 사람 간 2m(최소 1m)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거나 칸막이 설치 ■ **근로자 간 2m(최소1m)간격 유지 안내** ■ **점심시간 시차제 운영** - 식사시간을 2개조 이상으로 분리 운영(운영대장 작성) * 가급적 조별 인원 균등분할 *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안내	■ **근로자 간 2m(최소1m)간격 유지** * **특히, 밀폐된 작업장 내 반드시 준수** ■ **점심시간 시차제 참여** - 조별 식사시간 준수 *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
	⑧ **환기하기**	
	■ **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** **-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**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을 통한 환기횟수 증가 ** 자연환기 가능한 경우 상시 개방(권고) *** 냉·난방 작업장의 경우 2시간마다 1회(10분 이상) 자연환기 ■ **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 가동**(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) 하고 자연환기 병행 *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	
	⑨ **소독하기**	

구분	방역관리자·운영자 수칙	종사자(근로자)·방문자 수칙
	■ **일 1회 이상 소독** - **소독대장 작성** * 하역, 운반장비, 공용물품(작업복, 작업화 등)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■ **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공용물품은 사용후 소독하기**
	⑩ **기타**	
	■ **물류시설(구역)별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** ■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**증상 확인**(대장작성) ■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* 증상 유지 시 유급휴가(병가, 연가 휴가 등) 활용하도록 권장	■ 증상확인 협조 ■ 증상 있을 경우, 방역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출근 자제
추가수칙	① **근무형태**	
	■ 유연근무제(재택근무, 시차출퇴근 등), 휴가제도(가족돌봄휴가, 연차휴가, 병가 등)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	■ 유연근무제(재택근무, 시차출퇴근 등), 휴가제도(가족돌봄휴가, 연차휴가, 병가 등)를 적극 활용
	■ 업무특성 상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반영하여,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 -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외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	■ 충분한 휴게시간 이용
	② **회의 및 워크숍, 교육, 연수, 출장, 행사**	
	■ 출장 최소화, 회의 및 워크숍, 교육, 연수,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(영상)으로 실시 ■ 대면으로 회의, 워크숍, 교육, 연수 등 개최 시 개인위생수칙(마스크착용, 손 위생, 거리유지 등) 준수 안내 ■ 사업장 내 모임, 회식 자제	■ 출장 최소화 하기, 회의, 워크숍, 교육, 연수,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(영상)으로 참여 ■ 대면으로 회의, 워크숍, 교육, 연수 등 참여 시 개인위생수칙(마스크착용, 손 위생, 거리유지 등) 준수 ■ 사업장 내 모임, 회식 자제
	③ **구내식당, 통근버스, 기숙사, 시설 내 공용공간**	
	■ 해당 방역수칙 준수 안내	■ 해당 방역수칙 준수

<추가 적용 수칙>

▲ 콜센터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전체 근로자*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* 협력업체 근로자, 파견·용역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근로자 (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) 포함 -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(공간 당 최소 1개 이상)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-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-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-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-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 -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(대장 작성) -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	○(이용자) - 방역수칙 준수 -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▲ 유통물류센터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전체 근로자*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* 협력업체 근로자, 파견·용역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근로자 (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) 포함 -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(공간 당 최소 1개 이상)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-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-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-일 1회 이상 소독(소독대장 작성) * 하역, 운반장비, 공용물품(작업복, 작업화 등)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-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	○(이용자) - 방역수칙 준수 -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
-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(대장작성) -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*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(병가, 연가휴가 등) 활용하도록 권장	

3) 처분근거 :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의2호, 제83조 제2항 및 제4항

4) 처분사유 : 제천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
5) 처분기간 : 2021. 5. 3.(월) 00:00 ~ 2021. 5. 23.(일) 24:00

6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. 5. 3. 00:00부터

12. 기타 집합영업 분야

1) 처분당사자 : 제천시내 집합영업 분야 책임자·종사자 및 이용자, 방문판매에 관심 있는 시민

2) 처분내용

- 기타 집합영업 분야*는 **특정시설**** 에서 **다중을 집합하여 판매유도· 홍보· 설명 선전하는 일체 행위 금지권고, 시민의 타 시도 방문판매 행사 참석 금지 권고**

*** 의료기기·유사의료기기체험관, 투자권유업체 등**

**** 경로당, 마을회관, 기타 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**

3) 처분근거 :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의2호, 제83조 제2항 및 제4항

4) 처분사유 : 제천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
5) 처분기간 : 2021. 5. 3.(월) 00:00 ~ 2021. 5. 23.(일) 24:00

6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. 5. 3. 00:00부터

13.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

1) 처분당사자 : 제천시내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책임자·종사자 및 이용자

2) 처분내용

■ (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)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거나 그 외의 경우 **숙박시설 운영금지**

■ (보충형·통학형)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, 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교습, 소모임 등 모든 대면 활동 금지

① 전일제수업 또는 기숙형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(학원)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▸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▸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▸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▸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▸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*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(전일제 학원)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, 식당방역수칙(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)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▸ ① 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)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	▸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▸ 마스크 착용 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*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(전일제 학원)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, 식당방역수칙(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)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▸ ① 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)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② 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 준수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고,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시설 이용 금지 * ①안 ②안 중 시설에서 선택한 방안에 따라 준수 ▸ 숙박시설 이용 금지 * 단,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

② 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고,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 * ①안 ②안 중 선택 *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▸ **숙박시설 운영 금지** * **단,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** ① 입소자 (공통) 원칙적 외출금지,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- (입소前) 2주간 예방관리 권고,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- (입소後)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: 기숙사 밀도 조정(1인실 권고),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·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, 층간 이동 자제, 공용 공간(샤워실·화장실 등) 소독 강화, 대면수업 금지(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) -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(공통) 입소자와 동선 분리, 자가진단앱 체크 -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: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-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: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③ 방문자 : 시설 출입 금지 원칙,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, 방역수칙 준수: 시설 출입 금지 원칙,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, 방역수칙 준수	

② 보충형·통학형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(종교)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■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**이용자간 2m 이상 유지, 좌석 수 기준 20%** 또는 좌석 외의 경우 **면적** 등을 고려하여 **수용인원의 20% 이내 참여 가능** * 단,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 - **이용자간 2m 이상** 거리 유지를 전제로 **좌석** 또는 **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** 안내 - **개별 공간(예배실 등)** 및 건물 출입구 등에 **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**	■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**이용자간 2m 이상 유지, 좌석 수 기준 20%** 또는 좌석 외의 경우 **면적** 등을 고려하여 **수용인원의 20% 이내 참여 가능** * 단,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 - **이용자간 2m 이상** 거리 유지를 전제로 **좌석** 또는 **바닥면에 표시한 곳만 이용**

▪ 종교시설 주관의 **각종 대면 모임 활동** 및 **행사(숙박포함)*, 식사는 모두 금지** * **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심방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,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** ※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,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·행사(숙박포함) 주최 및 음식 제공 금지	▪ 종교시설 주관의 **각종 대면 모임 활동** 및 **행사(숙박포함)*, 식사는 모두 금지** * **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심방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,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** ※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,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·행사(숙박포함) 참석 및 식사 금지
▪ **큰 소리로 함께 기도, 암송하는 행위 금지, 성가대 금지**	▪ **큰 소리로 함께 기도, 암송하는 행위 금지, 성가대 금지**
▪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제공 금지 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	▪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▪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	▪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
▪ 정수기,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	▪ 정수기,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
▪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	▪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
▪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	▪ 마스크 착용
▪ 시설 내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	▪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
▪ 종교행사 전·후 시설 소독 및 환기	
▪ 방역관리자 지정	

3) 처분근거 :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의2호, 제83조 제2항 및 제4항

4) 처분사유 : 제천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
5) 처분기간 : 2021. 5. 3.(월) 00:00 ~ 2021. 5. 23.(일) 24:00

6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. 5. 3. 00:00부터

14. 대중교통

1) 처분당사자 : 제천시내 버스·택시·철도 등 운송수단(국제항공편 제외) 책임자·종사자 및 이용자

2) 처분내용 : 대중교통 이용자 아래 방역수칙 준수

*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 작성(단기 전세버스 이용 시만 해당, 통근·통학과 같은 정기적인 이용의 경우 탑승객 명부작성 예외)

① 대중교통

관리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▸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및 안전수칙(음주, 취식, 가무, 대화 등 자제) 게시 및 준수 안내 ▸ 차량 내 손소독제 비치, 운행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 ▸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	▸ 마스크 착용 ▸ 교통수단(차량)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, 국제항공편 제외

< 운송수단 적용 대상 >

-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(노선버스, 기차, 여객선 등)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(통근·통학버스,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, 택시 등)
- 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(국제항공편 제외)

3) 처분근거 :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의3호, 제83조 제2항 및 제4항

4) 처분사유 : 제천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
5) 처분기간 : 2021. 5. 3.(월) 00:00 ~ 2021. 5. 23.(일) 24:00

6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. 5. 3. 00:00부터

15.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 강력 권고

1) 처분대상 : 충북 시민 및 거주자 중 ① 타지역 방문자, ② 외지인 접촉자, ③ 다중이용시설 이용자, ④ 집화·행사 등 참석자 ⑤ 무증상자 또는 감염이 의심 되는 자, ⑥ 3밀(밀폐, 밀접, 밀집) 환경에서 공동생활 및 작업하는 자 등

2) 처분내용 :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진단검사 실시 강력 권고

3) 처분근거 :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6조

4) 처분사유 : 제천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
5) 처분기간 : 2021. 5. 3.(월) 00:00 ~ 2021. 5. 23.(일) 24:00

6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. 5. 3. 00:00부터

16. 기 타

○ 처분 당사자는「 행정절차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○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「 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「 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○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(300만원 이하의 벌금) 되거나, 제83조 제2항에 따라 관리자·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, 제83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 조사·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	5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붙임 1 제천시 분야별 주요 방역기준

구 분	준 2단계 주요 방역기준
모임·행사	- 100인 이상 모임·행사 금지 ※ 집회·시위, 대규모콘서트, 축제, 학술행사 50명 미만 제한 ※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(출입문) 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1m, 실외 2m이상 - 전국행사 금지 권고 - 도단위(2개 시군 이상) 행사 개최 금지 권고 - 시민↔타시도 가족·지인 등 방문 및 초청 금지 권고 - 불요불급한 모임·외출·행사 등 취소·연기 권고
사적 모임	-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* (제외) ① 직계가족(8인까지)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 ② 상견례(8인까지) ③ 영유아(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)를 동반하는 경우(8인까지,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), ④ 아동·노인·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,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 ⑥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, ⑦ 돌잔치 전문점 -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
유흥시설 5종, 홀덤펍	- 8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 -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유흥종사자 포함, 수기명부 작성 불가) - 춤추기, 테이블·룸 간 이동 금지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	-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- 4㎡당 1명으로 제한
노래연습장	-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 - 4㎡당 1명으로 제한
실내스탠딩 공연장	- 4㎡당 1명으로 제한
식당·카페	-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 -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간 한칸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
파티룸	- 4㎡당 1명으로 제한 -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㎡이상)
결혼식장, 장례식장	- 4㎡당 1명으로 제한
돌잔치 전문점	- 4㎡당 1명으로 제한
목욕장업	- 4㎡당 1명으로 제한
영화관·공연장	-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
PC방	-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오락실·멀티방	- 4㎡당 1명으로 제한

구 분	준 2단계 주요 방역기준
실내체육시설	- 6㎡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
학원, 교습소 등	- 6㎡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또는 한 칸 띄어 앉기
독서실, 스터디카페	- 다른 일행간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- 단체룸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%로 인원 제한
놀이공원·워터파크	- 수용가능인원의 50%로 인원 제한
이·미용업	- 4㎡당 1명으로 제한 또는 좌선 한 칸 띄우기
백화점·대형마트	- 발열체크 등 증상확인, 마스크 착용, 주기적 환기 소독
마트·상점 (300㎡ 이상)	- 발열체크 등 증상확인, 마스크 착용, 주기적 환기 소독
숙박시설	-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-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 금지 - 숙박시설 주관 파티·행사 개최 금지,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- 객실 정원관리 철저,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
전시회·박람회장	- 4㎡당 1명으로 제한
국제회의장	- 4㎡당 1명으로 제한
종교시설	- 대면예배(30%), 각종 모임·식사금지 · 기도원·수련원 등 방역 수칙 의무화 · 확진자 발생시설 집합금지
사회복지 생활시설	- 운영 · 2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단, 양로시설(공동생활가정 포함), 노인주야간보호센터, 장애인 거주시설은 1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
노인요양시설	- 운영 · 2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(시설내 상근하는 자 포함*), 의심증상이 발생하거나대면 종교활동 참여시 신속항원검사 활용 (종사자의 동거가족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 권고)
사회복지 이용시설	-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· 이용자음식물 섭취금지 · 경로당운영:10:00~16:00
요양·정신병원	- 운영 · 종사자, 입소자 예방교육 확대 (1일 2회 이상) · 정신병원 1주마다, 요양병원 2주 1회 PCR 진단검사 의무화
기타집합영업 (미등록방판업)	- 금지 권고(시민 타지역 방판 참석 금지 권고)
스포츠시설	- 관중입장(10%)
국·공립시설	- 방역수칙 준수 운영 ※ 경륜·경마·경정 운영중단 이외시설 30% ※ 공립공연장은 민간공연장과 동일기준 적용

붙임 2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문의처

연번	조 치 분 야	부 서	담당자	연 락 처
1	모임·행사	안전정책과 (안전정책팀)	주무관 **이상주**	043-641-6182
2	클럽, 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	보건위생과 (위생지도팀)	주무관 **박소연**	043-641-3186
3	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	일자리경제과 (지역경제팀)	주무관 **김기문**	043-641-6605
4	PC방, 오락실, 영화관, 멀티DVD방	문화예술과 (문화영상팀)	주무관 **원진수**	043-641-5517
5	노래연습장, 공연장, 종교시설	문화예술과 (문화영상팀)	주무관 **이정규**	043-641-5514
6	식당, 카페	보건위생과 (위생지도팀)	주무관 **박소연**	043-641-3186
7	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류)·실내체육시설,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·워터파크	체육진흥과 (체육지원팀)	주무관 **이윤경**	043-641-5574
8	국공립 실외체육시설	시설관리사업소 (체육시설1팀)	주무관 **홍성규**	043-641-5597
9	결혼식장	여성가족과 (여성친화팀)	주무관 **홍성민**	043-641-5392
10	장례식장	노인장애인과 (노인복지팀)	주무관 **지휴선**	043-641-5404
11	목욕장업	보건위생과 (위생지도팀)	주무관 **이민수**	043-641-3189
12	학원·독서실·스터디카페	홍보학습담당관 (대학교육지원팀)	주무관 **김유정**	043-641-5482
13	이·미용업	보건위생과 (위생지도팀)	주무관 **이민수**	043-641-3189
14	놀이공원	관광미식과 (관광기획팀)	주무관 **김주상**	043-641-6707
15	상점·마트·백화점	일자리경제과 (지역경제팀)	주무관 **김성수**	043-641-6603

연번	조 치 분 야		부 서	담당자	연 락 처
16	리조트, 호텔		관광미식과 (관광기획팀)	주무관 **김주상**	043-641-6707
17	게스트하우스		기획예산과 (기획팀)	주무관 **김태수**	043-641-5049
18	숙박업소		보건위생과 (위생지도팀)	주무관 **이민수**	043-641-3189
19	농어촌 민박		농업정책과 (농촌정책팀)	주무관 **강병선**	043-641-6802
20	야영장		관광미식과 (관광기획팀)	주무관 **황여원**	043-641-6703
21	파티룸 (숙박, 음식점 등 분야별 소관부서)	리조트, 호텔	관광미식과 (관광기획팀)	주무관 **김주상**	043-641-6707
		게스트하우스	기획예산과 (기획팀)	주무관 **김태수**	043-641-5049
		숙박업소	보건위생과 (위생지도팀)	주무관 **이민수**	043-641-3189
		농어촌민박	농업정책과 (농촌정책팀)	주무관 **강병선**	043-641-6802
		음식점	보건위생과 (위생지도팀)	주무관 **박소연**	043-641-3186
22	홀덤펍	자유업	보건위생과 (위생지도팀)	주무관 **박소연**	043-641-3186
		일반음식점	보건위생과 (위생지도팀)	주무관 **박소연**	043-641-3186
23	행정복지센터		자치행정과 (시정팀)	주무관 **박노혁**	043-641-5246
24	아파트내 편의시설		건축과 (공동주택팀)	주무관 **유희옥**	043-641-6312
25	노인주야간보호센터		노인장애인과 (복지시설팀)	주무관 **민은수**	043-641-5372
26	노인요양시설		노인장애인과 (복지시설팀)	주무관 **민은수**	043-641-5372

연번	조 치 분 야	부 서	담당자	연 락 처
27	양로시설(공동생활가정 포함)	노인장애인과 (복지시설팀)	주무관 민은수	043-641-5372
28	장애인직업 재활시설	노인장애인과 (장애인복지팀)	주무관 정인현	043-641-5353
29	장애인주간보호시설(이용시설)	노인장애인과 (장애인복지팀)	주무관 정인현	043-641-5353
30	장애인거주시설	노인장애인과 (장애인복지팀)	주무관 정인현	043-641-5353
31	노숙인시설	사회복지과 (복지기획팀)	주무관 김한철	043-641-5335
32	아동복지시설	여성가족과 (아동친화팀)	주무관 권정연	043-641-5415
33	여성폭력관련시설	여성가족과 (여성친화팀)	주무관 홍성민	043-641-5392
34	한부모시설	여성가족과 (여성친화팀)	주무관 노경예	043-641-5395
35	청소년시설	여성가족과 (청소년팀)	주무관 유수원	043-641-5473
36	정신병원	건강관리과 (방문건강팀)	주무관 윤종엽	043-641-3054
37	요양병원	보건위생과 (의약관리팀)	주무관 김연상	043-641-3163
38	경로당, 복지관	노인장애인과 (노인복지팀)	주무관 김현정	043-641-5402
39	콜센터	일자리경제과 (지역경제팀)	주무관 김기문	043-641-6605
40	마스크	감염병관리과 (감염병관리팀)	주무관 박소연	043-641-3903
41	어린이집	여성가족과 (보육지원팀)	주무관 조향숙	043-641-5422

연번	조 치 분 야		부 서	담당자	연 락 처
42	미인가 대안 교육시설	학원 (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)	홍보학습담당관 (대학교육지원팀)	주무관 김유정	043-641-5482
		종교시설 (보충형, 통학형)	문화예술과 (문화영상팀)	주무관 이정규	043-641-5514
43	대중교통	전세버스	교통과 (교통행정팀)	주무관 신명순	043-641-6335
		시외버스	교통과 (교통행정팀)	주무관 연인화	043-641-6333
		시내버스	교통과 (교통행정팀)	주무관 연인화	043-641-6333
		택시	교통과 (교통행정팀)	주무관 김성환	043-641-6332
		철도	교통과 (교통행정팀)	주무관 신명순	043-641-6335
44	사업장	기업체	투자유치과 (기업지원팀)	주무관 백윤경 주무관 신기현	043-641-6674 043-641-6673
		기업체	투자유치과 (투자유치팀)	주무관 박지은	043-641-6664
		기업체	신속허가과 (공장등록팀)	주무관 김은지	043-641-6552
		농업	농업정책과 (농업정책팀)	주무관 남동현	043-641-6807
		축수산업	유통축산과 (축수산팀)	주무관 남철우	043-641-6862
			유통축산과 (동물방역팀)	주무관 김정현	043-641-6874
45	유학생		홍보학습담당관 (대학교육지원팀)	주무관 이신탁	043-641-5483
46	돌잔치 전문점		보건위생과 (위생지도팀)	주무관 박소연	043-641-3186

연번	조 치 분 야	부 서	담당자	연 락 처
47	**마사지업, 안마소**	감염병관리과 (의약관리팀)	주무관 **김연상**	043-641-3163